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2025. 1.

고용노동부

목 차

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 1

1. 목적 및 근거 ····· 1

2. 주요 내용 ····· 1

3. 추진체계 ····· 2

Ⅱ.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 3

1. 사회적기업 제품 개요 ····· 3

2. 제품 구매 절차 ····· 5

Ⅲ. 구매실적 인정기준 및 집계 · 제출방법 ·· 10

Ⅳ. 협조 및 유의사항 ····· 14

[붙임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 근거 법령 ····· 17

[붙임 2] 사회적기업 제품 수의계약 관련 근거 법령 ····· 18

[붙임 3]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 21

[붙임 4]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관련 평가지표 ····· 28

[붙임 5] 자치단체 구매실적 및 총구매액 작성방법 ····· 34

[붙임 6]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전산매뉴얼 ····· 40

[붙임 7] 자주하는 질문(FAQ) ····· 64

[참고 1] e-store 36.5 공공기관 구매가이드 ····· 70

[참고 2] (오프라인)공동판매장(스토어36.5) ····· 77

[참고 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 80

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

□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2. 주요 내용

○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물품·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함

*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으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안전 및 책임경영 평가(기재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안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안부) 등 평가지표에 반영

○ **(대상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대상기관 명단: [붙임 3] 참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 교육청(17개)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 교육기관의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 **(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해당연도 2월 말일까지 지난해 구매 실적 및 올해 구매계획을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www.sepp.or.kr)**에 입력

* 자치단체 합동평가 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지표 및 기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계획 수립

- 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실적 제출 시, 합동평가 및 경영

평가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실적**도 제출 필요

○ **(공고)** 고용노동부는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기한(2월 말일)까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고 시 명단 공개

3.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지침 수립 및 통보, 공공기관 구매실적 관리 및 공고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지원, 사회적기업 구매촉진 관련 교육·홍보

○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작성,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이행, 소속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지원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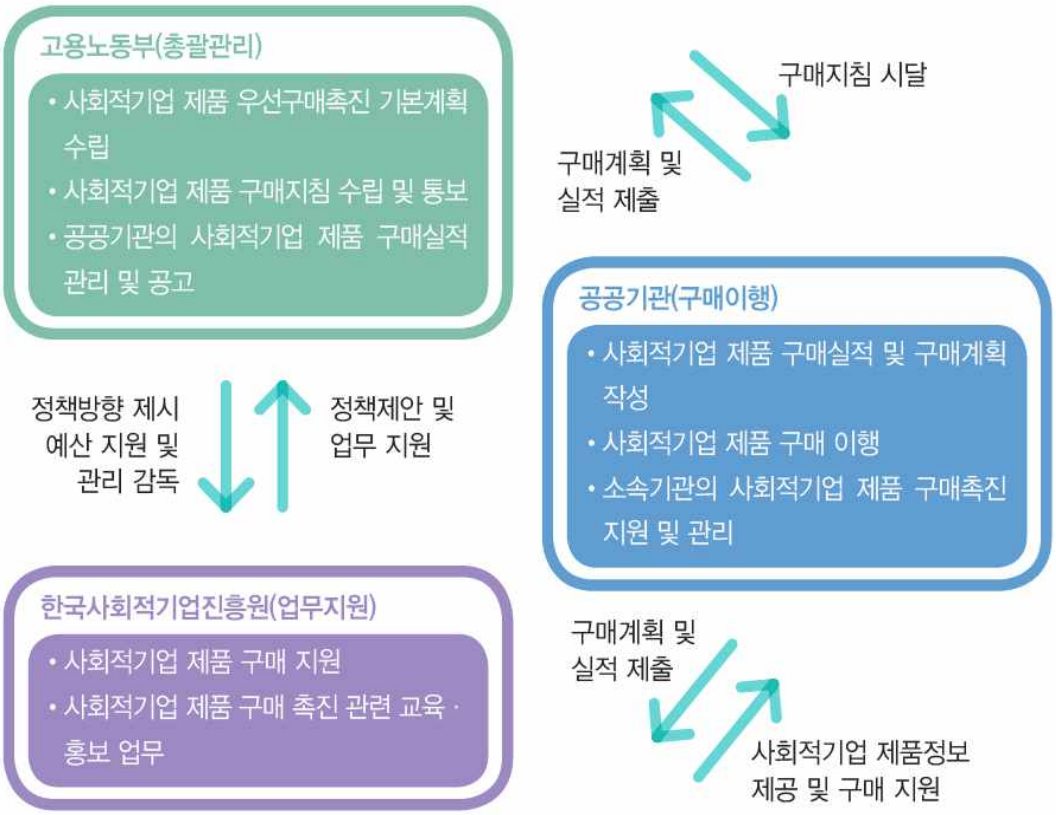

Ⅱ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1. 사회적기업 제품 개요

□ 사회적기업 제품의 정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인증사회적기업: '24년 3차 기준 3,76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은 법령상 우선구매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행안부 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평가실적에 포함**)

구분	인증사회적기업
표시	365 Company 사회적기업
개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상의 요건을 갖추고 인증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 명의로 인증된 조직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 인증) 및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인증기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유급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등의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상법상회사·합자조합의 경우: 이윤의 3분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인증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단, 취소·반납·만료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그 전날까지임)

- 사업자번호가 포함된 인증사회적기업 리스트는 인증 차수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store 36.5 (www.sepp.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e-store 36.5의 개요 및 주요기능에 대한 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 e-store 36.5 내 인증사회적기업 리스트 확인 방법 >

①e-store 36.5(www.sepp.or.kr) 접속 → ②우선구매실적/공공조달 → ③우선구매 공지사항 → ④'인증사회적기업 리스트' 게시글 확인 및 다운로드

2. 제품 구매 절차

1 1단계: 구매대상 품목 확인

□ e-store 36.5(www.sepp.or.kr)의 '사회적경제 상품몰'

○ (통합검색으로 찾기) 화면 중앙 상단의 통합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명 및 기업명 등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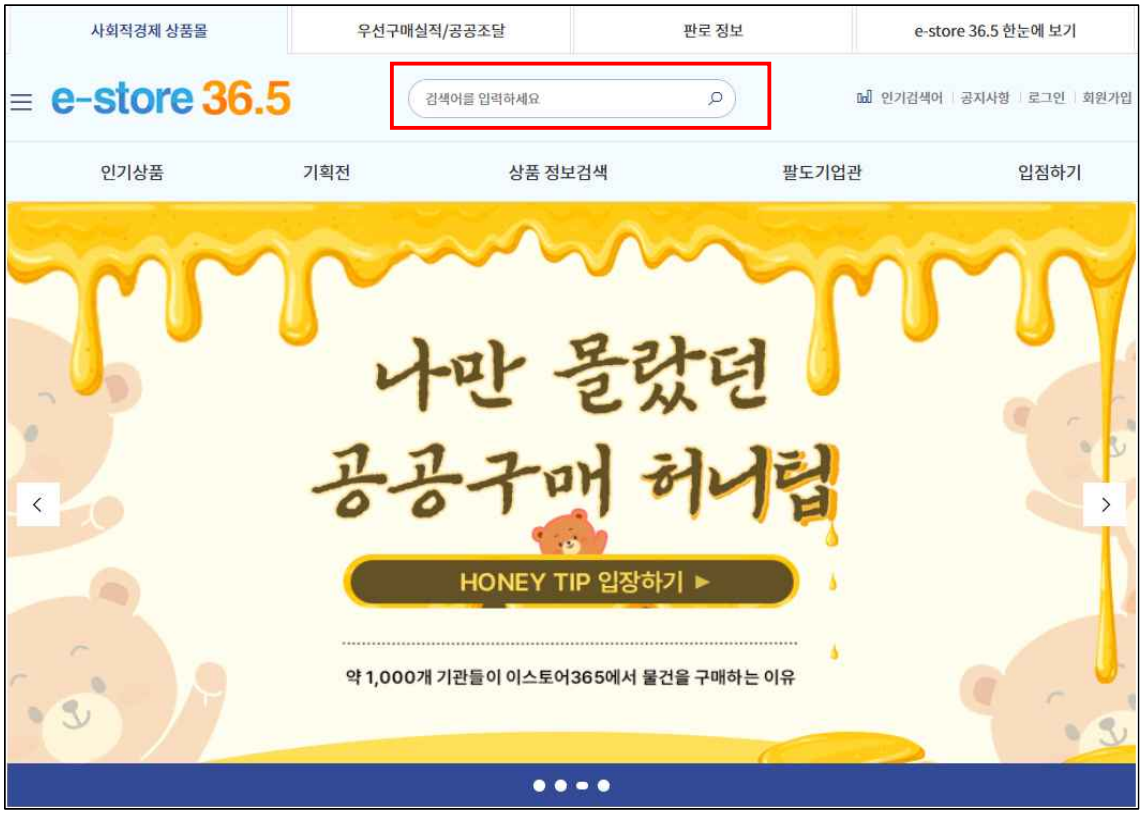

○ **(상품분류로 찾기)** 좌측 상단 메인메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선택 후 상세 검색창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검색

○ **(인증유형별 검색)** 화면 중앙 상단 상품 정보검색 내 '인증상품관'을 통해 인증기업 및 상품 유형별 검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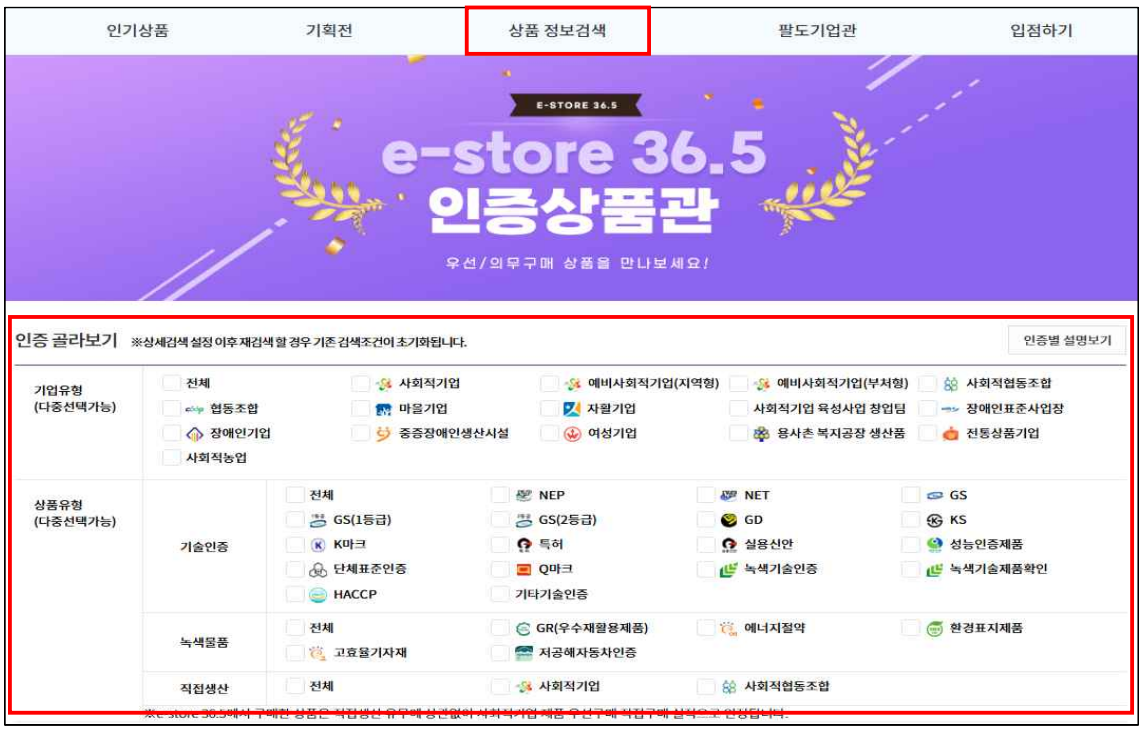

○ **(인기상품 확인)** 화면 좌측 상단 '인기상품' 창에서 확인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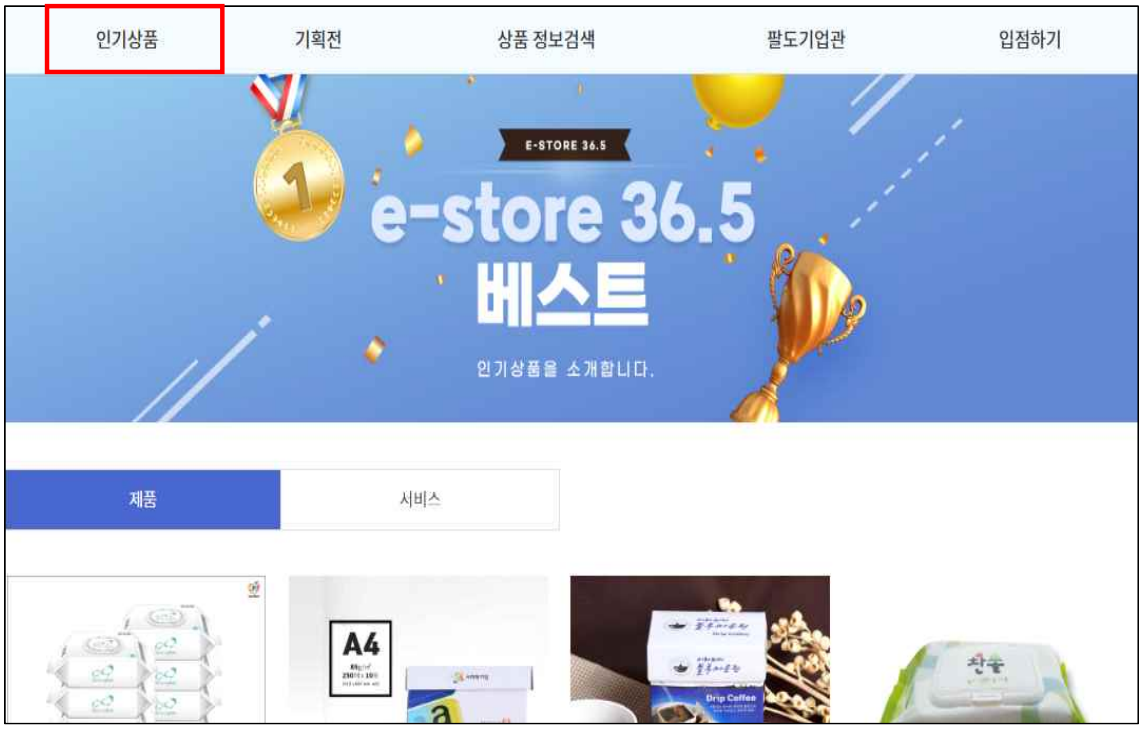

○ **(기업으로 찾기)** [우선구매실적/공공조달] → [우선구매 공지사항]에서 **사회적기업 리스트** 다운로드 가능

□ **공공구매 지원센터**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설치된 공공구매 지원센터를 통해 구매 상담 가능(☎1566-5365)

□ **나라장터 내 '사회적가치실현 기업 인증몰' 이용**

ㅇ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 내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인증몰 통한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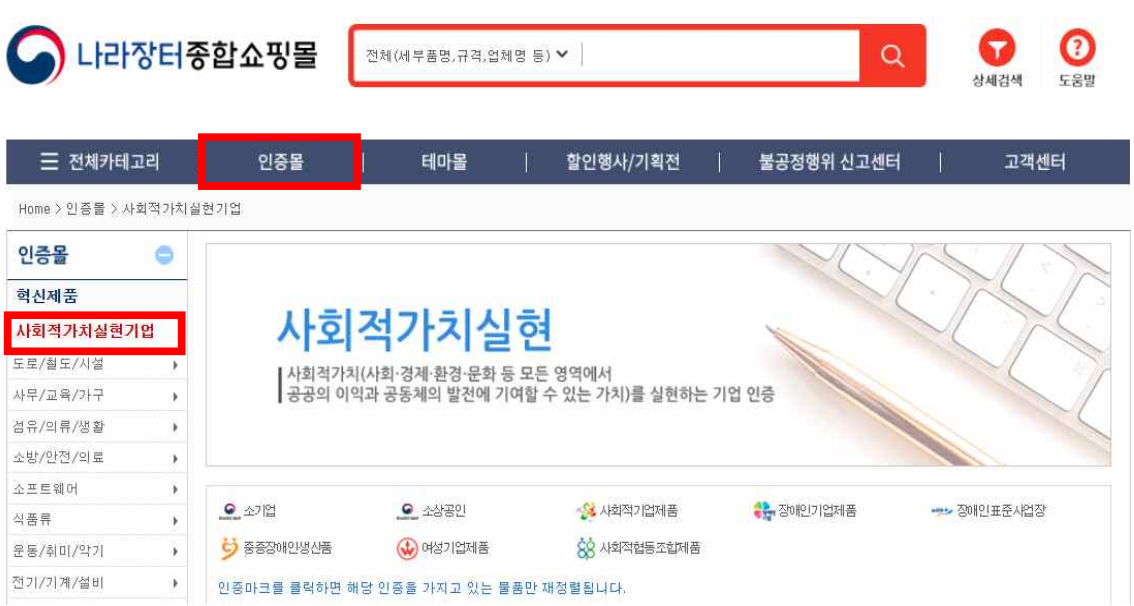

2 2단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 **구매방법**

ㅇ **(직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계약하여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 구매 또는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 결정

ㅇ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비사회적기업)과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

〈간접구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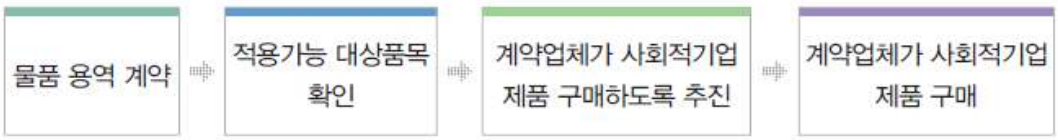

□ **계약방법**

○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 및 지명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

- 또한,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

○ **(수의계약)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기업에 한해 **1인 견적 5천만 원, 2인 견적 1억 원까지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를 넘어야 발급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및 발급 가능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해당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확인 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수의계약 체결

*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 **(입찰자격 평가)** 낙찰자 심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

- 물품 또는 용역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를 활용

- 자치단체 조례 및 기관별 구매지침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3 3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 (e-store 36.5) 소개된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쇼핑몰 내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을 이용하여 구매

Ⅲ 구매실적 인정기준 및 집계 · 제출방법

□ 구매실적 인정기준

○ 유효한 사회적기업 인증기간에 구매한 실적만 인정

예1) 2024.6.1.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2024.6.1.부터 구매한 내역부터 구매실적으로 인정(2024.5.31. 구매제품은 실적×)

예2) 2024.8.1.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또는 반납한 경우, 2024.7.31.까지 구매한 실적까지 인정(2024.8.1. 구매제품은 실적×)

- 사회적기업 지점*을 통해 구매한 경우, 본점의 유효한 인증기간에 구매한 실적만 인정

* 해당기업에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점 신청 후 진흥원의 승인이 완료된 지점에 한해서, 구매실적으로 인정

** 승인된 지점은 인증사회적기업 리스트에 포함됨

○ 직접구매뿐만 아니라 간접구매 실적도 구매실적으로 인정

① **직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구매한 실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소액구매 포함)

② **간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非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기업(非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 (단, 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단, 계약 업체와 사회적기업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구매실적 제출시 증빙자료 제출 불요, 요청시에만 제출)

- 자치단체에서 발행된 바우처 등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에 사용되어 대금이 지급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

* 단,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사용된 바우처 실적만 인정되며, 출연금·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e-store 36.5를 통해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은 직접구매 실적으로 인정

□ 구매실적 제외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총구매액	구매실적
공사	▪ 물품과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총구매액 기준 참조)	제외	포함
재화·서비스 구매와 관련 없는 지출	▪ 기관 운영을 위한 일상경비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식대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사례금·수당,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등	제외	제외
원자재·재료 구매액	▪ 가스, 석유, 전력, 유류, 연료, 광물 등	제외	제외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구매액	▪ **기타 유통업체**(장애인 판매시설, 일반 판매점 등)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구매액** ▪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구매액** ▪ 세트상품은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이 생산한 물품가액이 전체 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포함	제외
공공기관 子회사와의 계약	▪ 공공기관 子회사(동일 공공기관의 자회사)와의 위탁계약의 경우, 총구매액에서 제외	제외	제외
그 밖의 총구매액 제외로 인정된 사항	▪ ①기재부 및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성과 세부산식"의 단서조항에 따라 총구매액에서 제외되고, ②1번의 제외 사유가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에도 적용되어 총구매액 제외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경우 ▪ 다만, 총구매액 제외로 인정된 경우 공공구매 상담회 1회 이상 참석 필요	제외	제외

※ 공공기관 간 거래 → 수탁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구매실적은 위탁한 공공기관의 간접구매 실적으로 인정 / 단, 수탁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실적으로 포함한다면, 위탁 공공기관의 간접구매 실적에서는 제외(실적 중복인정 ×)

□ **총구매액 및 구매실적 집계방법**

○ **(총구매액) 구매율 산정 시 모수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과 용역(공사 제외)의 총 구매금액(SMPP 총구매액 기준 참조)

- 품의 유형과 무관하며, 물품(재화), 용역(서비스) 구매 관련 예산 비목으로 지출한 총구매액

○ 집계기준은 **계약일이 아닌 대금 지급(집행)일 기준**이며, **2024년 구매실적 대상기간은 2024.1.1.부터 2024.12.31.까지**임

- 2025년 구매계획 대상기간은 2025.1.1.부터 2025.12.31.까지임

* **계약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대금 지급일 기준**

○ 구매실적은 제품구매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와 인증사회적기업 리스트상 사업자번호의 매칭을 통해 구분**하여 집계함

- **(국가기관·자치단체·교육청)** 재정시스템인 '디브레인(국가기관), e-호조(자치단체), 에듀파인(교육청)'을 통해 집계 가능

- **(그 외 공공기관)** 사업자번호가 포함된 인증사회적기업 리스트를 자체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집계

- 기관의 재정시스템으로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및 간접구매 내역은 구매증빙 등을 확인하여 수기로 집계 필요

* 간접구매 실적의 경우 구매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

□ **구매실적 제출방법**

○ **[붙임 6] 전산 매뉴얼**을 참고하여 e-store 36.5(www.sepp.or.kr)에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입력 및 제출

* 공공기관별 회원아이디 중 '실적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아이디만 실적 입력 가능

** 기관 당 '실적관리자' 권한은 1명이며, 신규 담당자의 경우 회원가입 후 실적관리자 지정 요청 필요

○ **모든 공공기관은 [품목별 구매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월별 구매실적]으로 등록 가능

* '품목별 구매실적' 작성항목: 지급일자, 적요(건명), 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등

ㅇ 최상위 단위기관이 산하 소속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제출**

예)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이 소속기관인 교육지원청(각급 국·공립교육기관 포함)의 실적을 합산하여 제출

Ⅳ 협조 및 유의사항

□ **공공기관 담당자는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제품 구매 시 실적 확인 철저**

ㅇ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이 구매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이어야 함

- 따라서, **유통전문**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제품 중 **사회적기업 제품과 무관한(대기업 전자제품 등)** 경우 반드시 실적에서 제외

* '24년 제출된 우선구매 실적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이 고의·허위로 실적을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을 평가부처(행안부, 기재부)에 통보**할 계획

□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평가와 우선구매 연계**

ㅇ 향후,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결과, '**미흡**'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회적기업의 구매액은 우선구매 실적에서 제외할 계획

* 적용 시점 및 세부 적용기준 추후 별도 시달

ㅇ 아울러, '**사회적가치지표**' 평가결과, '**우수**' 또는 '**탁월**' 평가를 받은 사회적기업은 명단을 공표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촉진할 계획

*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측정·평가하여 대외 신뢰도 제고 및 각종 지원사업 연계 [사회적기업 기본계획(4차, '23.9월)]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정착**

ㅇ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자치단체 조례 및 내부 계약 관련 규정 등에 사회적가치 항목(참가자격 및 평가기준 등)을 반영

ㅇ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계획 수립 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소속 산하기관에서도 구매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리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전년도 구매실적보다 높은 비율**로 수립

□ **우선구매 교육 및 구매 독려**

ㅇ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의 이해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구매 담당자 교육 등 실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공공구매지원센터, ☎1566-5365**)을 통해 교육을 포함한 구매상담회 등 개최 협조 요청

** **진흥원 온라인 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을 통해 '공공기관을 위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교육' 상시 수강신청 가능[참고 3]

ㅇ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과 구매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기업이 계약수행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이용하도록 적극 독려(계약서 명시 등)

□ **특정기업 편중 구매 자제**

ㅇ 자체조달(수의계약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시 특정 사회적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기업에 안배하여 구매

□ **담당자 정보 갱신 및 권한 승인**

ㅇ 담당자 변경 시 e-store 36.5에 접속하여 우선구매 실적입력 시스템에 로그인 및 해당 정보 갱신

* 회원가입 및 **관리자 권한부여**(실적입력 관리자 아이디 변경) 관련 문의는 ☎ **1566-5365**

ㅇ 국가기관의 경우 디브레인 시스템 [지출 - 법적의무구매] 메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집계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관별 권한 승인 부서를 통해 사용자 권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상위 기관은 '부처별 관리자 권한', 소속기관은 '기관별 관리자 권한' 필요

□ **자치단체 협조사항**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반영하여 수립

-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검증을 위해 **품목별 구매실적 반드시 제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만료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전산(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정보 반영 관리

- 자치단체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대상 구매내역 분석 및 수의계약 활성화

붙임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2.1. 개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붙임 2	사회적기업 제품 수의계약 관련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5.1.개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참고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참고2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참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마목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2.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위 고용비율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붙임 3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 대상 공공기관

□ ‘24년 구매실적 및 ’25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850개 기관**

○ (신규, 10개소)

- <국가기관 1개소> : 우주항공청
- <지방공기업 5개소>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진주시시설관리공단
- <기타공공기관 3개소> : (식약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림청)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 <지방의료원 1개소> : 경기도의료원

○ (해제, 23개소)

- <기타공공기관 23개소> : (환경부 1개소)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과기부 22개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 현황 (‘24년말 기준) >

(단위: 개)

합 계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 방 공기업	지 방 의료원	기타 특별법인
		광역	기초							
850	57	17	226	17	32	55	240	164	36	6

구분	기관명
국가기관 (57)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

구분		기관명
		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243)	**광역 (1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 (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북구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군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구분		기관명
교육청 (17)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 기관 (350)	공기업 (32)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 정부 기관 (55)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구분		기관명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 공공 기관 (240)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훈부)** 88관광개발㈜, 독립기념관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

구분		기관명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구분		기관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방공기업 (164)		**(서울)**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부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대구)**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광주)** 광주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대전)**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수원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천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의정부도시공사,

구분	기관명
	평택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군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이천시시설관리공단,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양주도시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포천도시공사, 오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과천도시공사, 여주도시공사, 양평공사,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강릉관광개발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충북)** 충북개발공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충남)** 충청남도개발공사, 천안도시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전북)**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남)** 전남개발공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포항시설관리공단,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도시공사, 영천시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경남)** 경상남도개발공사,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진주시시설관리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지방의료원 (36)	**(서울)** 서울의료원 **(부산)** 부산의료원 **(대구)** 대구의료원 **(인천)** 인천의료원 **(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강원)** 강릉의료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남)**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남)**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경북)**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군의료원, 포항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제주)**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특별법인(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붙임 4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관련 평가지표

□ 공기업、준정부기관 안전 및 책임경영 평가(평가주체: 기재부)

※ 출처: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기준('24.9월, 기재부)

< '안전 및 책임경영' 세부평가항목(계량) >

안전 및 책임경영	가중치	주관부처
①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2점	
② 안전 및 재난관리	0.5점	
③ 친환경·탄소중립	0.5점	
④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2점	
중소기업생산품 구매	0.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생산품 구매	0.2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생산품 구매	0.2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산품 **구매**	**0.2**	**고용부**, 기재부
장애인생산품 구매	0.4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생산품 구매	0.2	국가보훈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0.3	중소벤처기업부
합 계	6.5점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및 서비스(0.2점) 평가배점은 대상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 70%, 사회적협동조합 30%로 평점 산정

1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1. 이행도 (50)	1-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50	정량
2. 향상도 (50)	2-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향상도	50	정량

2 평가기준 및 방법

① 이행도

평가지표	1-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50점)
측정산식	○ 당해연도 제품 구매 총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 (만점 3%) ■ X = ('24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24년 제품 구매 총액) × 100(%) <평정점(P) 산출 공식> ■ X ≧ 3인 경우, P = 50 ■ X < 3인 경우, P = 50 × (X / 3) * '제품 구매 총액'은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 총액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기준 참조)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 공사 구매액
	1. 당해연도 제품 구매 총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이 3% 이상 : 이행도(1-1) 및 향상도(2-1) 각각 만점 부여 2. 향상도(2-1)가 30.0% 이상인 경우(만점기준 대비 10%p 초과 달성) : 초과 달성분에 따라 이행도(1-1)에 가점 부여 * 초과 달성분에 대한 가점 산출식 : A-20.0(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근거/자료	○ 구매실적 자료

② 향상도

평가지표	2-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향상도(50점)
측정산식	○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대비 당해연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 (만점 20%) ■ A = ('24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23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23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100(%) <평정점(P) 산출 공식> ■ A ≧ 20%인 경우, P = 50 ■ 0% < A < 20%인 경우, P = A × (5/2) ■ A ≦ 0%인 경우, P = 0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 공사 구매액 * 당해연도 신규 평가기관의 경우 동 지표를 제외한 '이행도'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1. 당해연도 제품 구매 총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비율이 3% 이상 : 이행도(1-1) 및 향상도(2-1) 각각 만점 부여 2. 향상도(2-1)가 30.0% 이상인 경우(만점기준 대비 10%p 초과 달성) : 초과 달성분에 따라 이행도(1-1)에 가점 부여 * 초과 달성분에 대한 가점 산출식 : A-20.0(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근거/자료	○ 구매실적 자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주체: 행안부)**

※ 출처: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매뉴얼(행안부)

<table>
<tr><td>국정
목표</td><td>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td><td>국민
약속</td><td>2-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td></tr>
<tr><td>국정
과제</td><td colspan="3">2-6-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td></tr>
<tr><td>지표명</td><td colspan="3">㉯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우선구매율</td></tr>
<tr><td>측정
방법</td><td colspan="3">○ 산식
- (분야별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 산식 설명
- 총 구매액
□①자활용사촌 ②마을기업 ③자활기업 ④사회적협동조합 ⑤(인증・예비)사회적기업 : 지자체에서 물품, 용역구매를 위해 지출한 총 금액
· e호조 '계약관리' - '결산관리'- '계약현황' - '계약대금지급현황(30604)' 사용

- 분야별 구매액 : 분야별 구매를 위해 지출한 금액
· ②마을기업 ③자활기업 ⑤(인증・예비)사회적기업 ⑥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⑦녹색제품: 물품+용역+공사 구매 인정
- 목표치 :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분야 달성을 위해 구매해야 하는 비율
※ '24년 실적 - 최근 3개년(20년, 21년, 22년) 평균 사용
※ 녹색제품은 최고치 미충족이더라도, 전년 대비 구매액 증가 및 목표치 50% 이상 시 충족으로 판단
* 24년 실적 - 최근 3개년(20년, 21년, 22년) 평균비율의 + 5%
- 최저치 : 목표치의 70%
※ 자활용사촌은 최저치 미충족이더라도, 전년 대비 구매액 증가 시 충족으로 판단
※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증증장애인 생산품의 경우 법정 목표치와 동일
※ 녹색제품은 최저치는 최근 3개년(20년, 21년, 22년) 평균

○ 목표치: 8개 분야 중 4개 이상 목표치 달성
○ 목표치: 8개 분야 중 5개 이상 최저치 달성
※ 분야별 목표치 및 최저치 붙임 참조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24. 12. 31

○ 주의
- e-호조 시스템상 표기: 사회적기업 구매액 "물품·용역·공사"
- 단, '일반'으로 표출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중 구매와 관련 있는 실적(예: 청소용역 등)은 구매액에 포함
- '일반'으로 산출되는 실적 중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된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는 구매와 관련이 없으므로 구매실적에 미포함

<table>
<tr><th>평가 분야</th><th>개 념</th><th>근거법</th></tr>
<tr><td>(인증·예비)</td><td>(인증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td><td>「사회적기업</td></tr>
</table></td></tr>
</table>

사회적기업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처장이 지정	육성법」 제12조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국가유공자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4규정에 의거 국가보훈부장이 지정하고 승인한 생산품	-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의3에 의거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된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중증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대상으로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물품・노무용역) 구매 확대를 통해 생산시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도모 및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녹색제품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 **2024년 지역별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목표치(%)**

시부	
구분	**목표**
서울특별시	4.47
부산광역시	1.88
대구광역시	3.13
인천광역시	3.24
광주광역시	4.46
대전광역시	3.28
울산광역시	2.71
세종특별자치시	3.74

도부	
구분	**목표**
경기도	6.97
강원특별자치도	1.36
충청북도	4.07
충청남도	2.42
전라북도	2.82
전라남도	1.83
경상북도	1.62
경상남도	1.70
제주특별자치도	2.75

<table>
<tr><td></td><td>○ 2024년 지역별 최저치(%) : 목표치의 70%
<table>
<tr><th colspan="2">시부</th></tr>
<tr><th>구분</th><th>최저</th></tr>
<tr><td>서울특별시</td><td>3.13</td></tr>
<tr><td>부산광역시</td><td>1.32</td></tr>
<tr><td>대구광역시</td><td>2.19</td></tr>
<tr><td>인천광역시</td><td>2.27</td></tr>
<tr><td>광주광역시</td><td>3.12</td></tr>
<tr><td>대전광역시</td><td>2.30</td></tr>
<tr><td>울산광역시</td><td>1.90</td></tr>
<tr><td>세종특별자치시</td><td>2.39</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도부</th></tr>
<tr><th>구분</th><th>최저</th></tr>
<tr><td>경기도</td><td>4.88</td></tr>
<tr><td>강원특별자치도</td><td>0.95</td></tr>
<tr><td>충청북도</td><td>2.85</td></tr>
<tr><td>충청남도</td><td>1.70</td></tr>
<tr><td>전라북도</td><td>1.98</td></tr>
<tr><td>전라남도</td><td>1.28</td></tr>
<tr><td>경상북도</td><td>1.14</td></tr>
<tr><td>경상남도</td><td>1.19</td></tr>
<tr><td>제주특별자치도</td><td>1.93</td></tr>
</table>
○ 목표치: 8개 분야 중 4개 이상 목표치 달성,
8개 분야 중 5개 이상 최저치 달성
○ 평가대상: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2024. 12. 31.</td></tr>
<tr><td>연계
시스템</td><td>e호조시스템(지방재정시스템)</td></tr>
<tr><td>분석
자료</td><td>시·도, 시·군·구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td></tr>
<tr><td>증빙
자료</td><td>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e호조 자동집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업DB와 e-호조 대금지급처의 사업자번호 비교 산출
-(e-호조 미집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기업DB와 해당 지출건 거래처로부터 확인한 구매내역 자료</td></tr>
</table>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주체: 행안부)**

※ 출처: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행안부)

<table>
<tr><td>지 표 명</td><td colspan="5">권장정책 목표 달성도</td></tr>
<tr><td>대 분 류</td><td colspan="3">경영성과</td><td>중 분 류</td><td>정책이행성과</td></tr>
<tr><td>가 중 치</td><td><u>1.0점</u></td><td>지표성격</td><td>정량</td><td>평가방법</td><td>단계별</td></tr>
<tr><td>지표정의</td><td colspan="5">○ 권장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전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td></tr>
<tr><td>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td><td colspan="5">○ <u>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1.0점)</u></td></tr>
<tr><td>세 부
평가방법</td><td colspan="5">○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 구매실적 평가
<table>
<tr><th>구분</th><th>득점 산식</th><th>비 고</th></tr>
<tr><td>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생산품</td><td>X/2%× 1점</td><td>X = 총 구매 물품,용역(공사 제외) 대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물품·용역 구매율(%)
※ 2%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2 부여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td></tr>
</table>
- 구매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td></tr>
</table>

붙임 5	자치단체 구매실적 및 총구매액 작성 방법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시 주요 유의사항 >

□ **총구매액 작성**

○ **합동평가 총구매액과 다름**에 유의

* 합동평가의 총구매액은 편의상 e호조의 물품 및 용역의 지출금액으로 산정

○ **총구매액(공사 제외) 추출방법**

= ①e호조의 **총구매 중** '**물품**' 금액 + ②e호조의 **총구매 중 '용역'** 금액 + ③e호조의 **총구매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③-1: e호조의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의 품의유형 '일반' 중에서 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 + ③-2: **e호조로 지출하지 않은 실적(간접구매, 바우처 등)**)

□ **구매실적 작성**

○ 법령상 우선구매대상인 **인증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이외에도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도 제출**

○ 실적 검증을 위해 **'품목별 구매실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직접구매의 경우 **'통계목' 반드시 입력**

○ **사회적기업 구매실적(공사 포함) 추출방법**

= ①e-호조의 **사회적기업생산품 추출자료 중 구매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 + ②e-호조에서 **자동 추출되지 않는 구매실적(간접구매, 바우처 등)**

□ **인정 기준**

○ e호조의 총구매 중 **'물품'·'용역'·'공사'** 및 **거래(去來)대금으로 지출된 '일반'**만 해당(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포함)

○ **(제외)** e호조의 총구매 중 '일반'인 금액 중에서 거래(去來)대금이 아닌 **지원금, 보조금, 수당, 운영비 등**

○ 지침 p40의 **<예산 통계목별 인정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 판단**

1 구매실적 작성 방법

ㅇ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제품의 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합계액

- **(직접구매)** e-호조의 사회적기업생산품 추출 자료 중 구매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

* 지침 39쪽 3 인정·제외기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제외한 순수 구매실적

- **(간접구매)** e-호조에서 자동 추출되지 않는 구매실적으로서,
  ① 계약기업(비사회적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매한 실적
  + ② 전자바우처 등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사용된 실적

- **(제출방법)** 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품목별 실적을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면 시스템에서 월별, 품목별(물품/용역) 구매실적이 자동계산됨

<직접구매 제출 서식(엑셀)>

지급 일자	기관명 (부서명)	적요(건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통계목

<간접구매 제출 서식(엑셀)>

지급 일자	기관명 (부서명)	적요(건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 통계목은 e-호조에서 추출한 직접구매만 작성(e-호조 미추출자료는 미기입 가능)

ㅇ e호조 추출 자료의 품의유형별 물품/용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

구분	물품	용역
품의유형	물품구입	용역, 공사
	관급자재	수리/수선
	일반 중 물품	일반 중 용역

2 총구매액 산정방법(「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공고 대상인 총구매액)

ㅇ 총구매액은 물품 및 용역 등의 구매 총액을 말하며,

- ① e호조의 총구매 중 '**물품**' 금액 + ② e호조의 총구매 중 '**용역**' 금액 + ③ e호조의 총구매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 위 '③'의 총구매에 미포함된 구매실적은 (③-1) e호조의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품의유형 '**일반**' 중에서 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 + (③-2) e호조로 지출하지 않은 실적

<e호조 시스템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추출 내역>

구분	e호조상 총구매 구분	제출시 구매실적 구분
품의유형	물품 공사 용역	물품 공사 용역 **일반**

* e호조의 총구매에 미포함된 사회적기업 구매실적은 '총구매액'에 추가하여 보정필요 (보정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O, 예비 사회적기업 X)

** 간접구매 또는 바우처 사용을 통해 구매된 금액 등은 e호조에서 추출되지 않으므로 수기로 집계

*** 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총구매액은 편의상 e호조 시스템상의 물품 및 용역의 지출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차이 발생

○ **(①, ② 작성방법)** e호조 사회적기업구매실적 탭의 통계자료에서 구매기간을 2024-01-01부터 2024-12-31로 설정 후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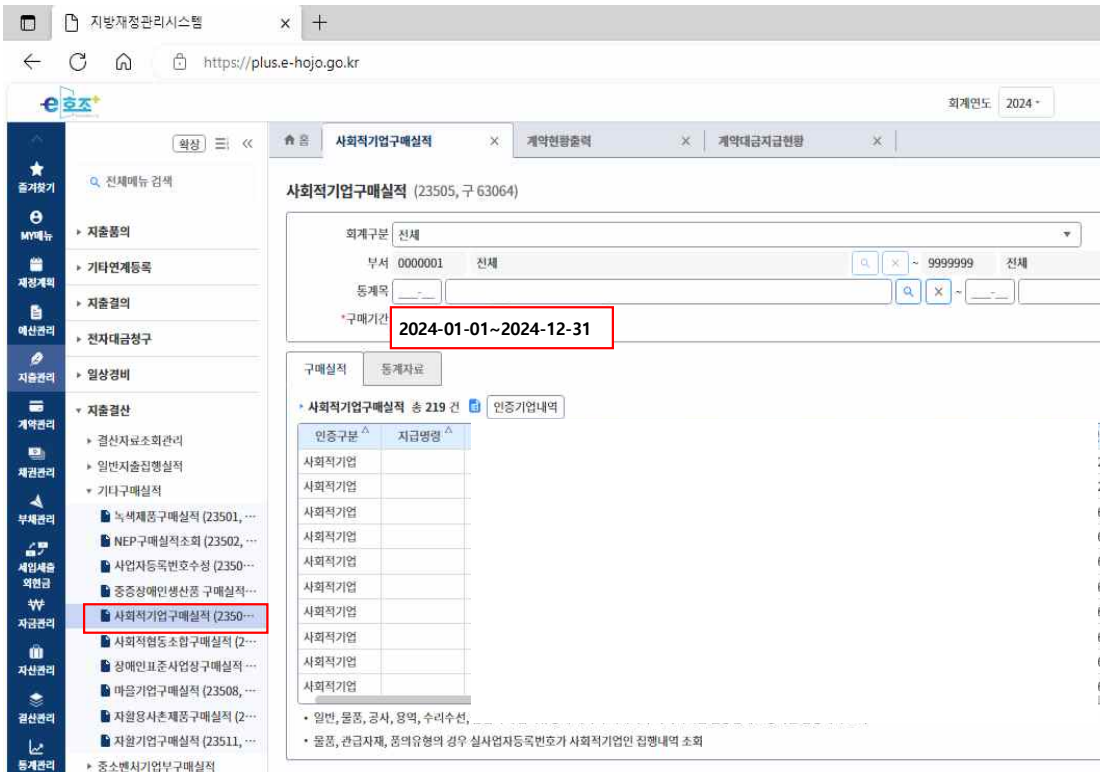

○ **(③ - 1 작성방법)** e호조에서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추출 → 품의유형 '일반'으로 필터 → 보조금을 제외한 구매실적 합계금액

	A	B	C	D	E	F	G	H	I	J	K	L
1	e호조 추출 인증사회적기업 구매실적											
2	인증 구분	지급일자	부서	적요	거래처명	사업자등록 번호	구매 금액(원)	품의 유형	경비구분	통계목	제외금액 (원)	최종인정금액(원)
3	총계								③-1	품의유형 일반 중 인증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계		1,646,051,780
4	사회적기업	2019-01-04	안전정책과	[illegible]	㈜0000	0000000000	44,000	일반	일상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4,000
5	사회적기업	2019-01-04	안전정책과	[illegible]	㈜0000	0000000000	66,000	일반	일상경비	201-01 사무관리비		66,000
6	사회적기업	2019-01-10	정책기획관	[illegible]	㈜0000	0000000000	1,896,000	일반	일상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896,000
7	사회적기업	2019-01-15	예산담당관	[illegible]	㈜0000	0000000000	1,078,000	일반	일반지출	201-01 사무관리비		1,078,000
8	사회적기업	2019-01-09	예산담당관	[illegible]	㈜0000	0000000000	66,000	일반	일상경비	201-01 사무관리비		66,000
9	사회적기업	2019-01-03	[illegible]	사무용품 구입(토너 등 5종)	㈜0000	0000000000	222,880	일반	일상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22,880
10	사회적기업	2019-01-10	녹지공원과	[illegible]	㈜0000	0000000000	55,000	일반	일상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5,000
11	사회적기업	2019-01-10	녹지공원과	부서 업무용 물티슈 및 각티슈 구입	㈜0000	0000000000	272,000	일반	일상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72,000
12	사회적기업	2019-01-10	녹지공원과	[illegible]	㈜0000	0000000000	286,000	일반	일상경비	201-03 행사운영비		286,000
13	사회적기업	2019-01-10	녹지공원과	복사용지 구입	㈜0000	0000000000	536,000	일반	일상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36,000
14	사회적기업	2019-01-10	녹지공원과	회의용메모지 및 메모홀더 구입	㈜0000	0000000000	593,100	일반	일상경비	201-01 사무관리비		593,100
15	사회적기업	2019-01-08	[illegible]	복사용지 구입	㈜0000	0000000000	1,380,000	일반	일반지출	201-01 사무관리비		1,380,000
16	사회적기업	2019-02-14	대변인	보도자료 참고용 도서 구입	㈜0000	0000000000	494,820	일반	일상경비	201-01 사무관리비		494,820

○ **(③ - 2 작성방법)** e호조를 통해 추출되지 않는 구매실적(바우처 사용실적, 간접구매 등)의 합계금액

	A	B	C	D	E	F	G	H
1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출한 인증 사회적기업 구매내역							
2								
3	사회적기업 구분	자치단체명	부서	지급일자	바우처 서비스유형	사회적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매금액
4				③-2	e호조 미집계 인증사회적기업 구매실적 계			294,019,622
5	인증	00시	주민생활지원과	2019-02-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0	0000000000	3,976,500
6	인증	00시	주민생활지원과	2019-03-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0	0000000000	124,000
7	인증	00시	주민생활지원과	2019-05-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0	0000000000	2,892,500
8	인증	00시	주민생활지원과	2019-07-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0	0000000000	2,110,000
9	인증	00시	주민생활지원과	2019-07-2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0	0000000000	620,000
10	인증	00시	주민생활지원과	2019-08-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0	0000000000	224,000
11	인증	00시	노인장애인과	2019-03-2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000	0000000000	97,436
12	인증	00시	노인장애인과	2019-04-0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000	0000000000	97,436
13	인증	00시	노인장애인과	2019-04-1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000	0000000000	82,048
14	인증	00시	노인장애인과	2019-04-25	발달재활	㈜0000	0000000000	176,000
15	인증	00시	노인장애인과	2019-05-09	발달재활	㈜0000	0000000000	88,000
16	인증	00시	노인장애인과	2019-05-15	발달재활	㈜0000	0000000000	44,000

3 e호조 추출자료의 품의 유형별 구매실적 인정 및 제외 기준

○ e호조 추출자료 중 '일반' 유형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지급된 금액이 모두 구매실적으로 집계되므로, 구매(거래)와 관련 없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수당, 운영비 등은 구매실적에서 제외

- **(실적 인정)** e호조의 총구매 중 '**물품**'、'**용역**'、'**공사**' 및 거래(去來) 대금으로 지출된 '**일반**'만 해당(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포함)

- **(실적 제외)** e호조의 총구매 중 '일반'인 금액 중에서 거래(去來) 대금이 아닌 지원금, 보조금 등

<품의 유형 '일반'의 구매실적 인정 기준>

구분	구매실적 인정 (거래 성격의 대금)	구매실적 제외 (거래 성격이 아닌 지원금·보조금 등)
거래 여부	■ 대가성을 가진 거래(去來) 성격의 금액으로서, 물품·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대금(거래의 개념) * 사회적기업의 회계장부상 매출로 처리	■ 민간에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지원금, 보조금 등(거래의 개념 아님) * 사회적기업의 회계장부상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예시	■ 민간위탁 사업비, 정부행사 운영비, 정부양곡 택배비, 노인종합돌봄·가사간병·장애아동지원·산모신생아 바우처 등	■ 일자리지원금, 종사자 수당,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노후차 폐차 지원금, 기능보강사업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시설지원비 등

<예산 통계목별 인정여부>

예산 통계목	예산 통계목별 설명	인정 여부
민간경상보조 (307-02)	민간이 행하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X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3)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	X
민간행사 사업보조 (307-04)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X
이차보전금 (307-08)	특정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 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X
운수업계 보조금 (307-09)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X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307-10)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X
사회복지 사업보조 (307-11)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X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1, 02)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지급하는 민간 자본형성 보조금	X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위 통계목 중 거래성격의 대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적인정 가능

*** 위 표 외에도 구매·거래대금이 아닌 보조금 등은 제외(출연금(306-01), 보험금(307-06), 연금지급금(307-07), 이차보전금(307-08) 등)

붙임 6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전산매뉴얼

1. e-store 36.5 접속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www.sepp.or.kr)

□ 회원가입

ㅇ 화면 상단 [회원가입]

ㅇ [공공기관 가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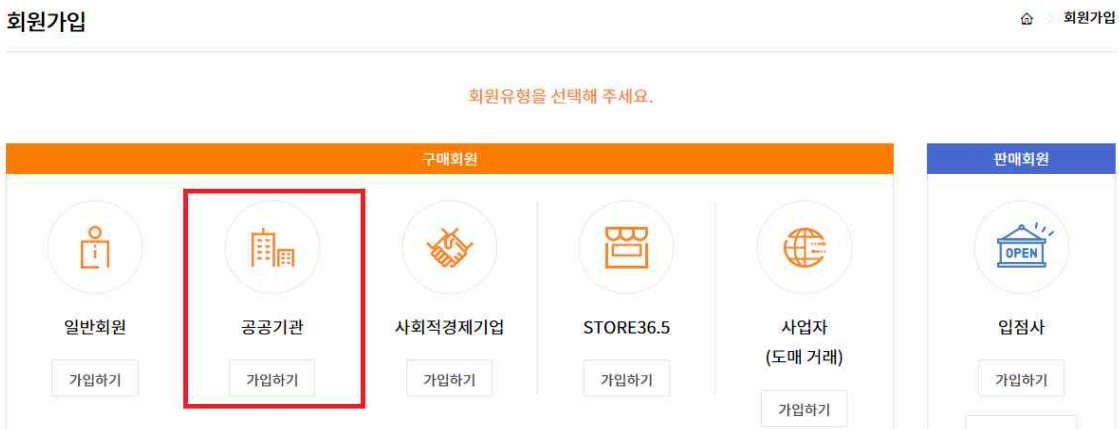

○ [약관동의] → [다음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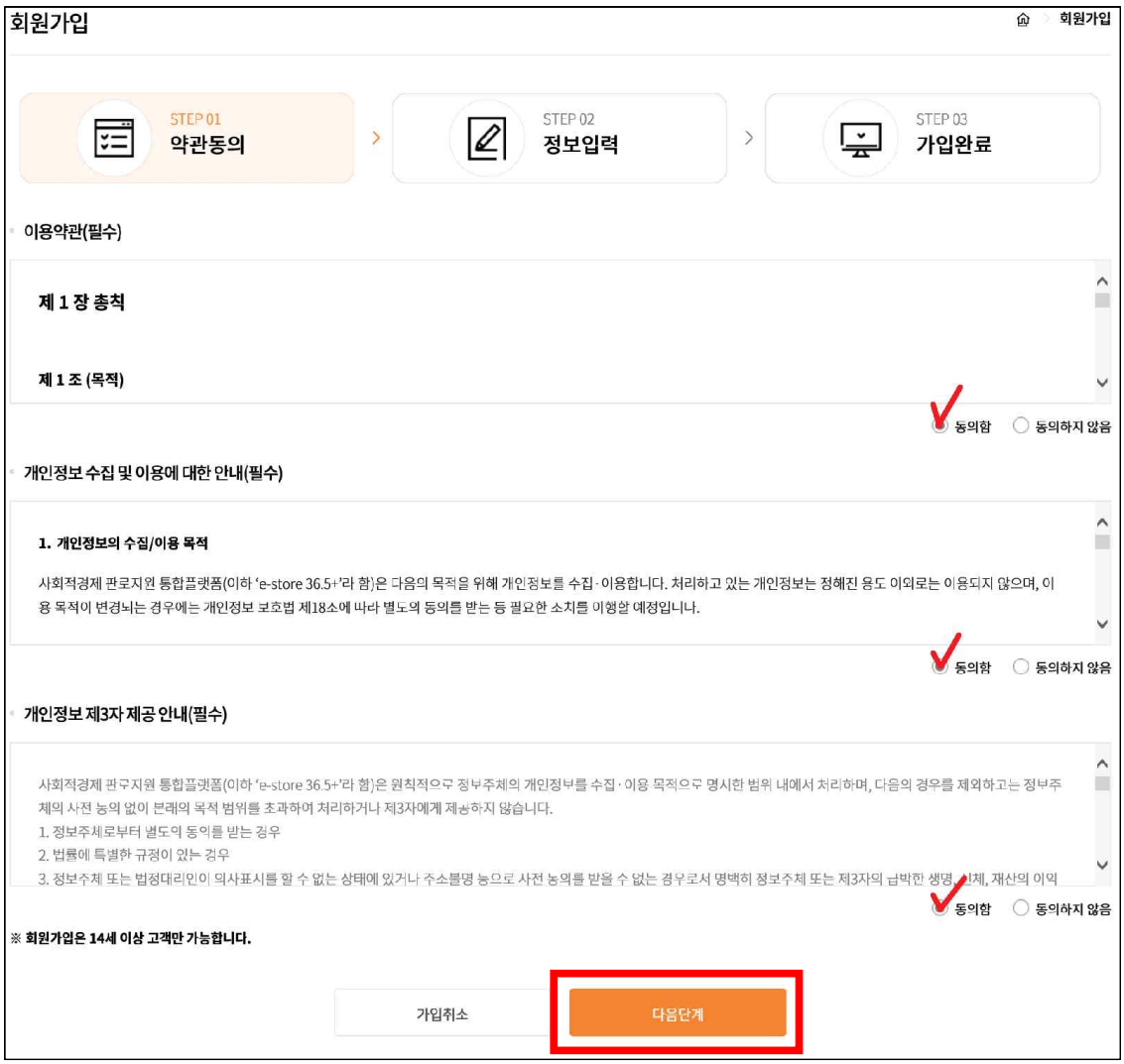

○ [기관정보 입력]

- 소재 시/도: 최상위 기관이 위치한 지역 선택
- 소속 기관: 실적 입력대상 최상위 기관명 검색

※ **실적관리자 승인불가 기관:** △△지사, △△면리, △△유초중고, △△교육지원청도서관, △△시 @@과, 문화재청 △△관리소,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과 등
→ **<u>각 기관의 최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의 구매실적 합산</u>**

- 기관 주소: 최상위 기관이 위치한 주소 입력
- 가입자 부서명: 실적입력 담당자의 부서명 입력
- 고유번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번호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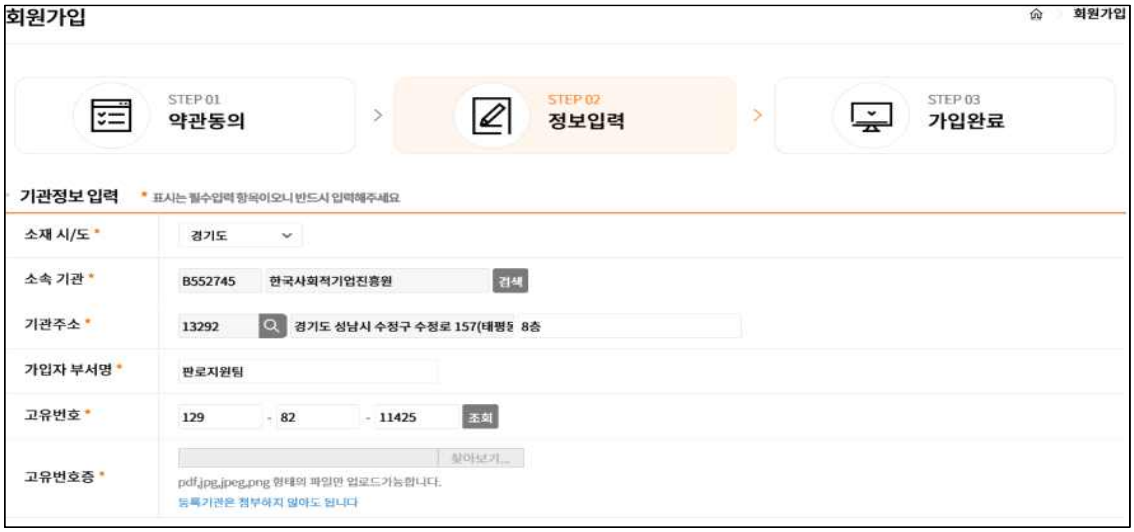

○ [기본정보 입력] → [다음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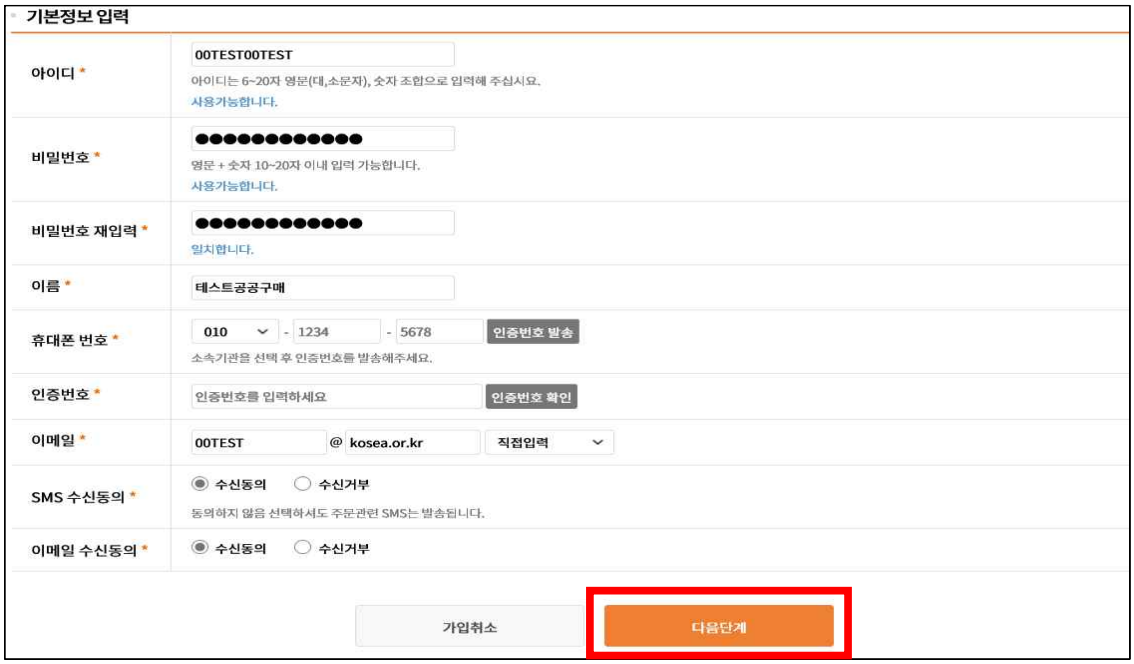

○ [가입완료] 확인 → 관리자 승인 → [로그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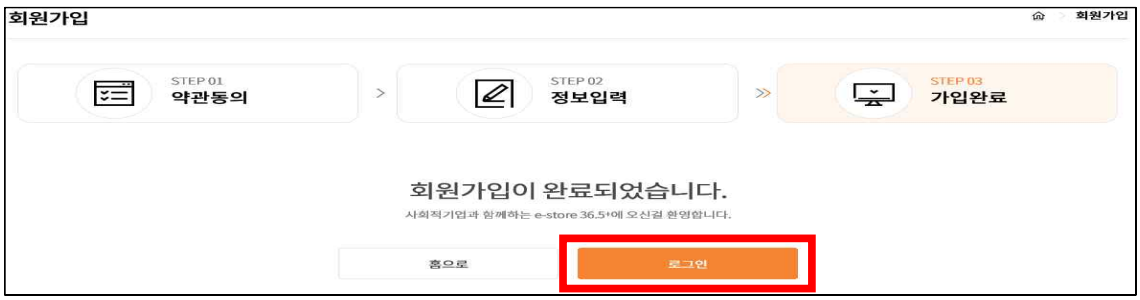

□ 로그인

ㅇ 화면 상단 [로그인]

ㅇ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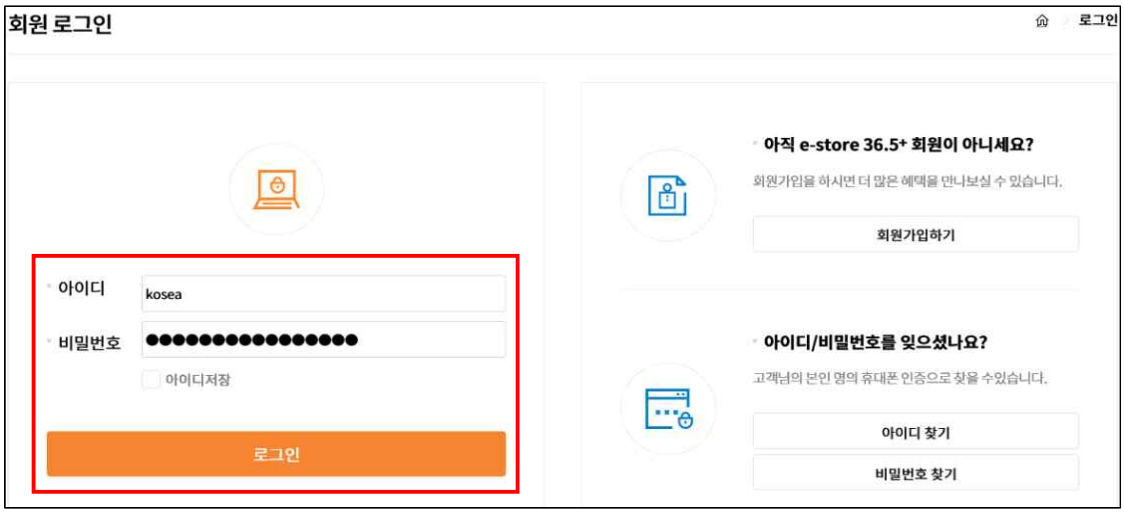

※ 담당자, 휴대폰번호, 메일 변경, 비밀번호 5회 불일치로 계정을 알 수 없는 경우
☎ 031-697-7832, 031-697-783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문의

2. 2024년 구매실적 및 2025년 계획 입력

<작성시 유의사항>

○ **구매실적 작성대상: '인증 사회적기업'만 작성**

(단, 지자체, 지방공기업은 평가를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실적 필수 제출)

○ **입력기한**: 2025.2.28.까지(기한 내 수정 가능하며, 기한 이후 수정 불가)

○ **[총구매액] : 물품과 용역(공사 제외) 구매금액**(SMPP 총구매액 기준 참조) **품의 유형과 무관**하며 물품, 용역 구매 관련 예산 비목으로 지출한 **총구매액**

*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 총구매액과 다름에 유의 **[붙임6 참조]**

○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이 없을 경우**

→ [총구매액] 반드시 입력,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0" 입력

- 국가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 디브레인, 이호조, 에듀파인 등 재정시스템 조회
- 그 외 공공기관 → 사회적기업 명단을 자체 재정시스템에 반영 집계

○ 구매실적·계획 집계 기준 시점은 계약일이 아닌 **대금 지급(집행)일 기준**

- **'24년도 구매실적 입력 대상 기간: 2024.1.1.~2024.12.31.**
- **'25년도 구매계획 입력 대상 기간: 2025.1.1.~2025.12.31.**

* 계약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대금 지급일 기준**

○ [2025년도 구매계획]은 [2024년도 구매실적]을 참고하여 작성

○ **[총 구매액]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에서 모두 제외되는 항목**

- **재화, 서비스 구매와 관련 없는 금액**

* 기관운영을 위한 일상 경비적 지출(인건비,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식대 등)

**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사례금, 수당 등

*** 산하기관 출연금, 각종 보조금, 기부금 등

- **원자재, 재료 구매액**

* 가스, 석유, 전력, 유류, 연료, 광물 등

○ **[총 구매액]에는 포함되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기타 유통 업체(장애인판매시설, 일반 판매점 등)**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구매액**
-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않은 제품 구매액**
- 세트상품은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이 생산한 물품 가액이 전체 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ㅇ [우선구매실적/공공조달] → [우선구매 계획/실적 등록]

- 우선구매 실적관리자 권한 승인 후 접속 가능

***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32, 031-697-7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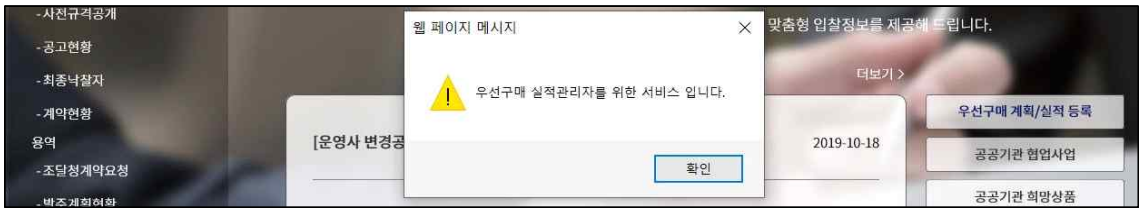

ㅇ [사회적기업 실적 관리]

* [기준연도 조회]로 과거실적 조회 가능

3. 2024년 구매실적 등록

□ 공공기관별 등록 대상

공공기관 / 등록절차	국가 기관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타 특별 법인	지방 의료원	자치 단체	지방 공기업
1 총구매액	○	○	○	○	○	○	○
2-1 인증사회적 기업(직접구매)	○	○	○	○	○	○	○
2-2 인증사회적 기업(간접구매)	○	○	○	○	○	○	○
3-1 예비사회적 기업(직접구매)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
3-2 예비사회적 기업(간접구매)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
3. 구매계획	○	○	○	○	○	○	○
4. 검토 및 제출	○	○	○	○	○	○	○

1 2024년 총구매액 등록

1) 인증사회적기업(직접구매) 화면 → '[2024년] 총구매액 등록' [엑셀양식 다운로드] → 파일 저장

* 총구매액 등록은 '인증사회적기업(직접구매)' 입력 화면에서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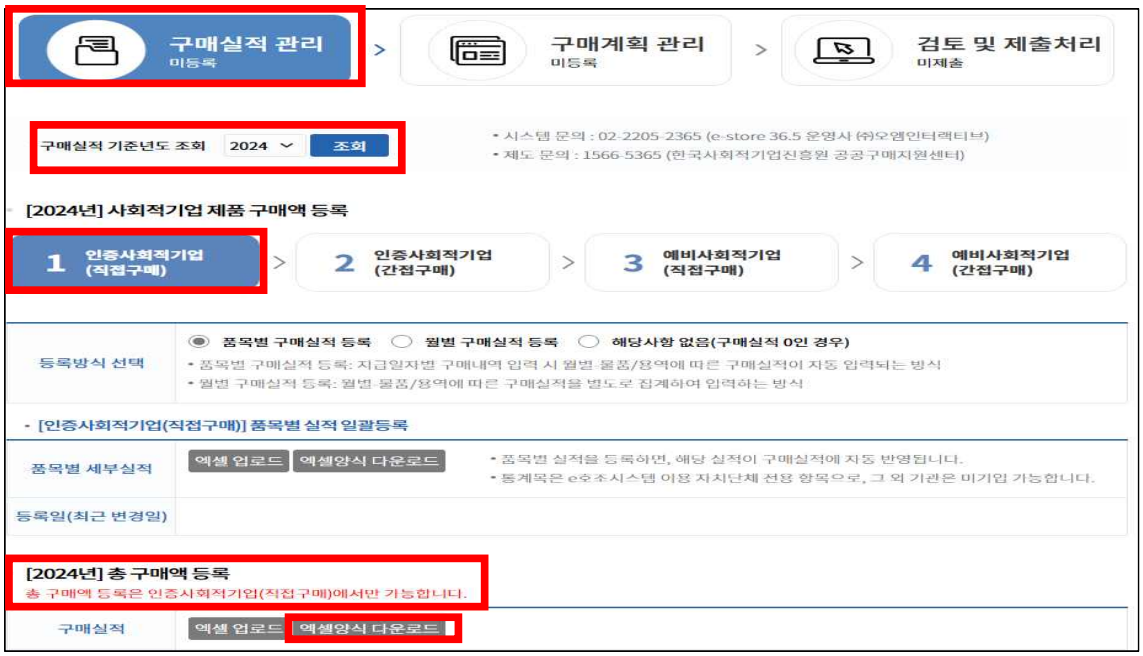

* **[기준연도 조회]가 2024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2) 엑셀양식 파일(총구매액(양식).xlsx)에 총구매액 작성(원 단위)

* '총구매액'은 해당 공공기관의 물품 및 용역 구매총액(공사 제외)이며,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합산 금액이 아님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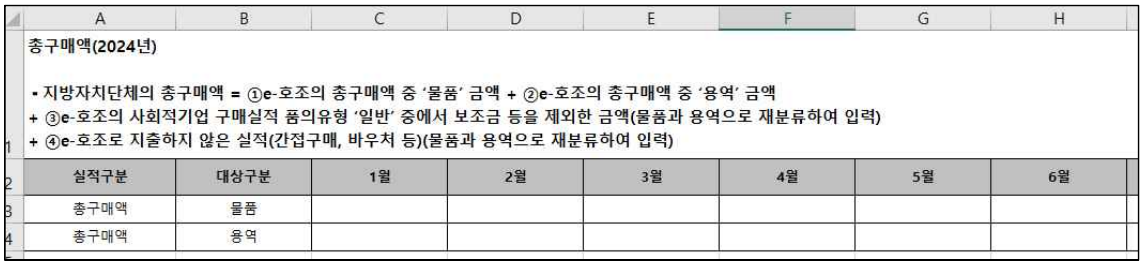

총구매액(2024년)

- 지방자치단체의 총구매액 = ①e-호조의 총구매액 중 '물품' 금액 + ②e-호조의 총구매액 중 '용역' 금액
+ ③e-호조의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품의유형 '일반' 중에서 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물품과 용역으로 재분류하여 입력)
+ ④e-호조로 지출하지 않은 실적(간접구매, 바우처 등)(물품과 용역으로 재분류하여 입력)

실적구분	대상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구매액	물품						
총구매액	용역						

3) [엑셀 업로드]

4) [파일선택] → 작성한 파일 업로드 →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검사결과] 확인(정상, 공란, 오기재) → [저장하기]

* 엑셀 업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고, 최근 업로드한 데이터로 갱신됨

2-1 2024년 인증사회적기업(직접구매) 구매실적 등록

<구매실적 등록시 유의사항>

○ **(품목별 구매실적)** 모든 공공기관은 [품목별 구매실적]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월별 구매실적]으로 등록 가능

* 특히, **자치단체**의 경우 [품목별 구매실적] 메뉴에서만 등록 가능하여, [월별 구매실적] 메뉴를 통해 등록 불가

○ **(실적이 없어도 입력)**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0원')에도 시스템에 0원으로 입력해야 함

가.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 차년도 실적입력('25년 구매분)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모두 <u>품목별 구매실적으로 입력 필수</u>**

1) [인증사회적기업(직접구매)] →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 [엑셀양식 다운로드] → 파일 저장

2) 엑셀 양식 파일(인증사회적기업_직접구매_품목실적(양식).xlsx)에 '24년 구매실적 작성

○ **(작성항목)** 지급일자, 최하위기관명(부서명), 적요(건명), 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통계목

* 작성항목은 모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계목(201-01 사무관리비, 201-03 행사운영비 등)은 e호조시스템 이용 자치단체 전용 항목으로, 자치단체 외 기관은 미기입 가능

○ **(유의사항)** 모든 엑셀 양식의 데이터 표시형식은 모두 [텍스트]이며, 원본의 표시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변경 시 등록오류 발생)

<엑셀 양식 작성시 유의사항>

□ **원본 데이터 표시형식('텍스트') 유지**

○ 지급일자 : [YYYY-MM-DD] 또는 [YYYYMMDD] 형태 유지, [날짜] 형식으로 변경 금지

○ 사업자등록번호 : [AAA-BB-CCCCC] 또는 [AAABBCCCCC]의 형태 유지, [사용자지정] 형식으로 변경 금지

○ 지급금액 : [회계] 또는 [통화]로 변경 금지, '원' 단위 작성

<표시형식 유지 방법>

: 엑셀에서 작성한 내용 복사 → 메모장에 붙여넣기 → 메모장에 붙여넣은 내용을 다시 복사 → 엑셀 표시형식을 [텍스트]로 지정 후 붙여넣기

□ **하단 공란 삭제**

○ 작성내용 하단에 테두리만 있는 공란이 있는 경우 모두 삭제

직접구매(2023년) 오류 화면 예시

지급일자	하위기관명(부서명)	적요(건명)	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통계목
2023-07-05	공공기관명	기념품 구매	999-88-85456	100	통계목
2023-07-05	공공기관명	기념품 구매	999-88-85456	100	통계목
2023-07-05	공공기관명	기념품 구매	999-88-85456	100	통계목

3) [엑셀 업로드]

4) [파일 선택] → 작성한 파일 업로드 → [등록방식] 선택(초기화후 등록 또는 추가등록) →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검사결과] 확인(정상, 비매칭, 공란, 오기재, 중복) 및 수정 → [저장하기]

* 초기화 후 등록(등록방식):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는 자동 삭제되고, 최근 업로드한 엑셀 정보만 노출

** 추가 등록(등록방식):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가 유지되고, 최근 업로드한 엑셀 정보가 추가

*** 구매내역 단일 업로드는 최대 3,000개 내역까지 가능. 3,000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등록'을 통해 업로드 가능

<오류 사유>

①비매칭: 구매실적의 사업자번호가 인증사회적기업리스트에 포함된 사업자번호와 불일치할 경우 또는 지급일자가 인증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②공란: 지급일자, 부서명, 적요, 사업자번호, 지급금액 중 하나라도 비어있을 경우

③오기재: 지급일자, 사업자번호, 지급금액이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④중복: 지급일자, 부서명, 적요, 사업자번호, 지급금액이 같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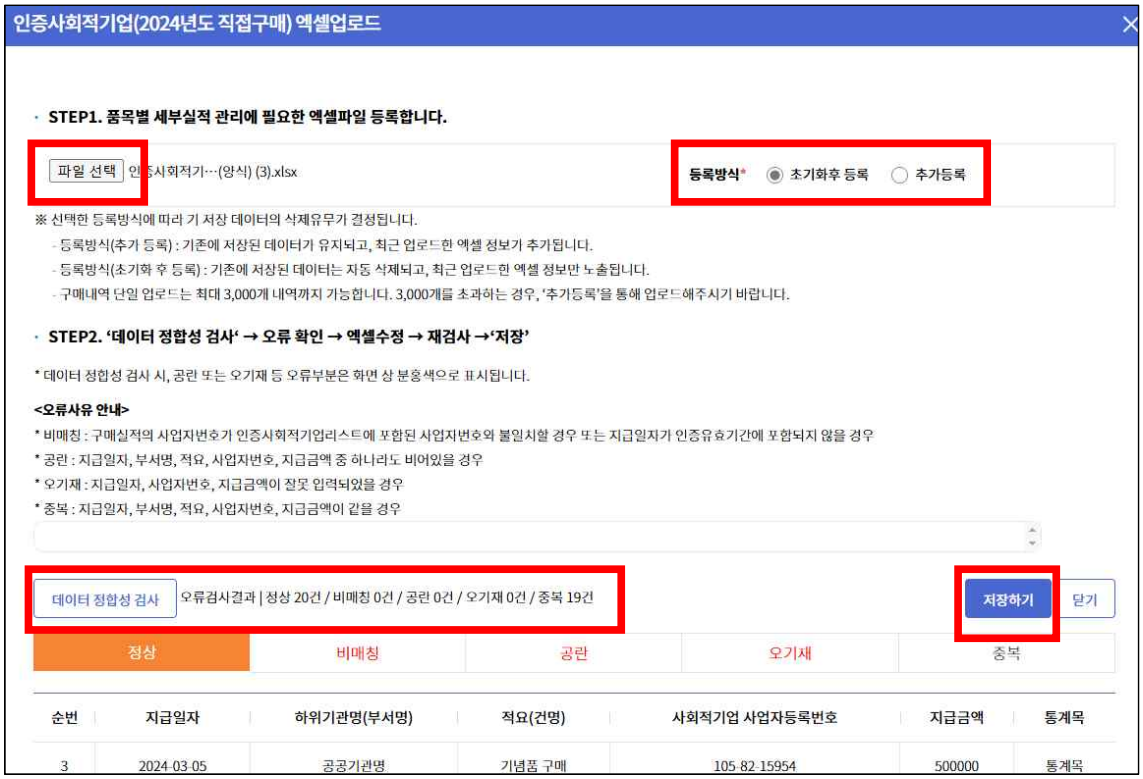

나. [월별 구매실적] 등록

* [품목별 구매실적] 방식으로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만 선택

** **차년도 실적입력('25년 구매분)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월별 구매실적 등록 불가**

1) 등록방식 선택 → [월별 구매실적 등록] → [엑셀양식 다운로드] → 엑셀 파일 저장

2) 엑셀 양식(사회적기업_구매실적(양식).xlsx)에 월별 구매액 작성(원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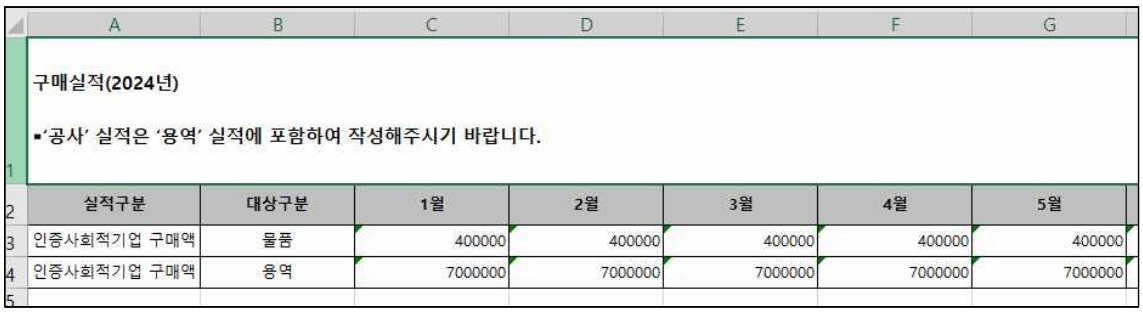

구매실적(2024년)

▪'공사' 실적은 '용역' 실적에 포함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구분	대상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인증사회적기업 구매액	물품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인증사회적기업 구매액	용역	7000000	7000000	7000000	7000000	7000000

3) [엑셀 업로드]

4) [파일선택] → 작성한 파일 업로드 →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 검사결과] 확인(정상, 공란, 오기재) 및 수정 → [저장하기]

* 엑셀 업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고, 최근 업로드한 데이터로 갱신됨

5) [(인증)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및 [총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 [구매실적 저장] → 다음 단계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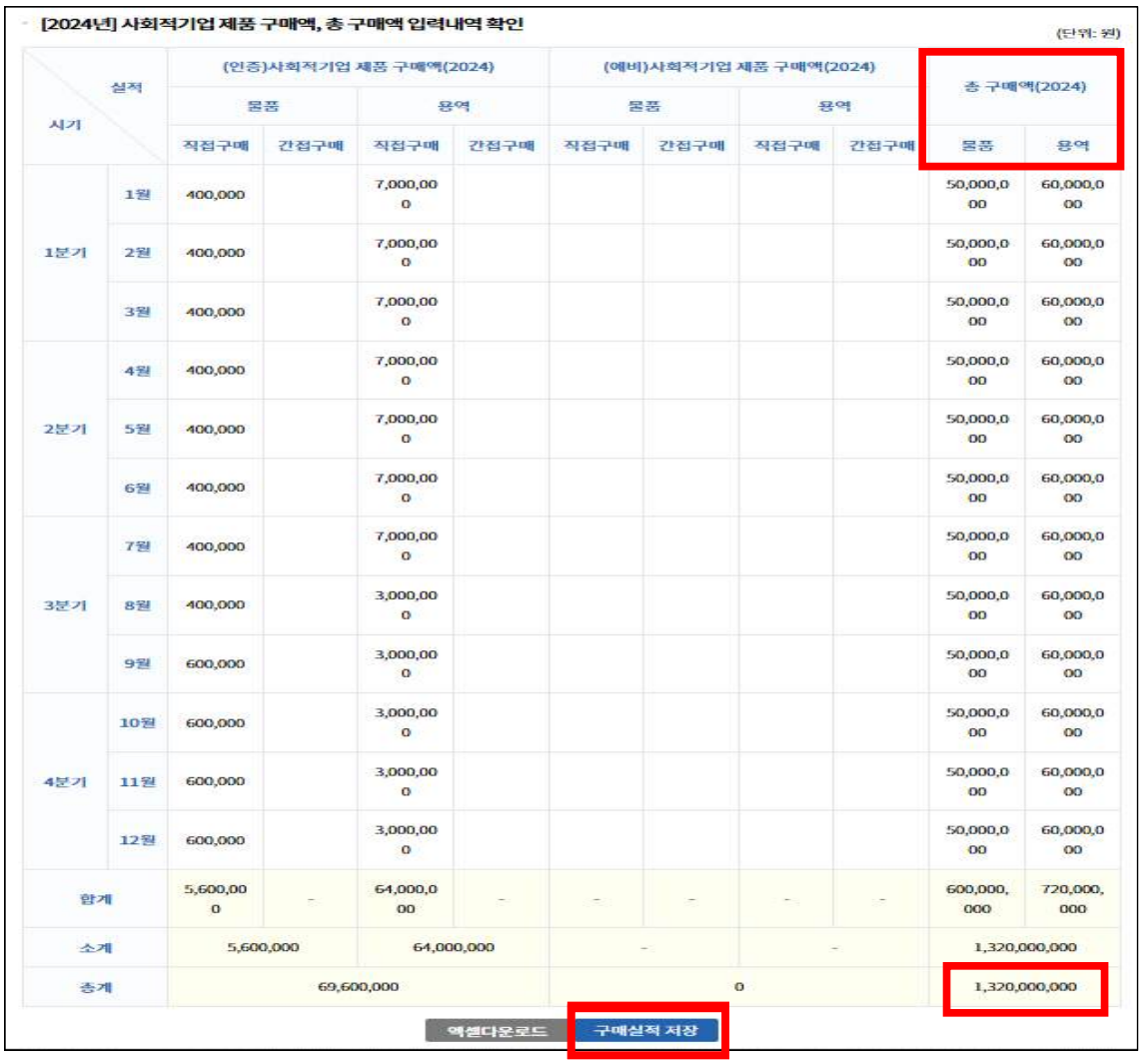

[2024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단위: 원)

시기 \ 실적		(인증)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2024)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2024)				총 구매액(2024)	
		물품		용역		물품		용역			
		직접구매	간접구매	직접구매	간접구매	직접구매	간접구매	직접구매	간접구매	물품	용역
1분기	1월	400,000		7,000,000						50,000,000	60,000,000
	2월	400,000		7,000,000						50,000,000	60,000,000
	3월	400,000		7,000,000						50,000,000	60,000,000
2분기	4월	400,000		7,000,000						50,000,000	60,000,000
	5월	400,000		7,000,000						50,000,000	60,000,000
	6월	400,000		7,000,000						50,000,000	60,000,000
3분기	7월	400,000		7,000,000						50,000,000	60,000,000
	8월	400,000		3,000,000						50,000,000	60,000,000
	9월	600,000		3,000,000						50,000,000	60,000,000
4분기	10월	600,000		3,000,000						50,000,000	60,000,000
	11월	600,000		3,000,000						50,000,000	60,000,000
	12월	600,000		3,000,000						50,000,000	60,000,000
합계		5,600,000	-	64,000,000	-	-	-	-	-	600,000,000	720,000,000
소계		5,600,000		64,000,000		-		-		1,320,000,000	
총계		69,600,000				0				1,320,000,000	

엑셀다운로드 구매실적 저장

2-2. 2024년 인증사회적기업(간접구매) 구매실적 등록

가.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 총구매액 등록은 인증사회적기업(직접구매)에서만 가능

1) 등록방식 선택 →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 [엑셀양식 다운로드] → 엑셀 파일 저장

2) 엑셀 양식 파일(인증사회적기업_간접구매_품목실적(양식).xlsx)에 실적 작성

* 엑셀 양식에 작성시 원래의 표시형식[텍스트]을 그대로 유지(변경시 오류발생)

	A	B	C	D	E
1	간접구매(2024년)				
2	지급일자	하위기관명(부서명)	적요(건명)	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3	2024-07-05	공공기관명	기념품 구매	999-88-85456	100
4	2024-07-05	공공기관명	기념품 구매	999-88-85456	100
5	2024-07-05	공공기관명	기념품 구매	999-88-85456	100

3) [엑셀 업로드]

4) [파일 선택] → 작성한 파일 업로드 → [등록방식] 선택(초기화후 등록 또는 추가등록) →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검사결과] 확인(정상, 비매칭, 공란, 오기재, 중복) 및 수정 → [저장하기]

* [거래실적 다운로드] : e-store36.5를 통한 구매실적 확인 가능(참고용)

5) 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실적이 합산된 [(인증)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확인 → [구매실적 저장]

나. [월별 구매실적] 등록

* [품목별 구매실적] 방법으로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용

1) 등록방식 선택 → [월별 구매실적 등록] 선택 → [엑셀양식 다운로드] → 엑셀 파일 저장

2) 엑셀 양식 파일(사회적기업_구매실적(양식).xlsx)에 월별 구매액 작성(원 단위)

* 엑셀 양식에 작성시 원래의 표시형식[텍스트]을 그대로 유지(변경시 오류발생)

3) [엑셀 업로드]

4) [파일선택] → 작성한 파일 업로드 →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 검사결과] 확인 (정상, 공란, 오기재) 후 수정 → [저장하기]

* 엑셀 업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고, 최근 업로드한 데이터로 갱신됨

5) 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실적이 합산된 [(인증)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확인 → [구매실적 저장] → 다음 단계로 이동([구매계획 관리])

* 단,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실적 등록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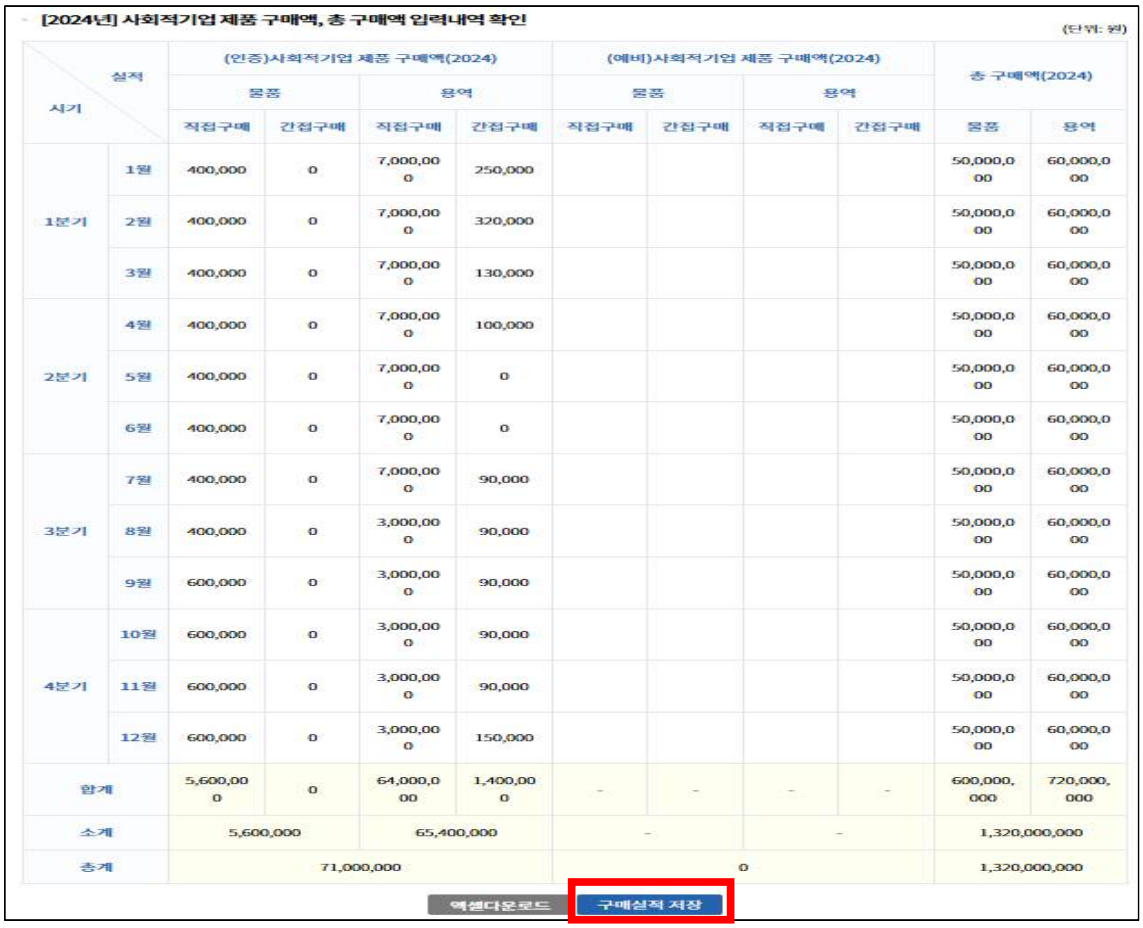

[2024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단위: 원)

시기 \ 실적		(인증)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2024)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2024)				총 구매액(2024)	
		물품		용역		물품		용역			
		직접구매	간접구매	직접구매	간접구매	직접구매	간접구매	직접구매	간접구매	물품	용역
1분기	1월	400,000	0	7,000,000	250,000					50,000,000	60,000,000
	2월	400,000	0	7,000,000	320,000					50,000,000	60,000,000
	3월	400,000	0	7,000,000	130,000					50,000,000	60,000,000
2분기	4월	400,000	0	7,000,000	100,000					50,000,000	60,000,000
	5월	400,000	0	7,000,000	0					50,000,000	60,000,000
	6월	400,000	0	7,000,000	0					50,000,000	60,000,000
3분기	7월	400,000	0	7,000,000	90,000					50,000,000	60,000,000
	8월	400,000	0	3,000,000	90,000					50,000,000	60,000,000
	9월	600,000	0	3,000,000	90,000					50,000,000	60,000,000
4분기	10월	600,000	0	3,000,000	90,000					50,000,000	60,000,000
	11월	600,000	0	3,000,000	90,000					50,000,000	60,000,000
	12월	600,000	0	3,000,000	150,000					50,000,000	60,000,000
합계		5,600,000	0	64,000,000	1,400,000	-	-	-	-	600,000,000	720,000,000
소계		5,600,000		65,400,000		-		-		1,320,000,000	
총계		71,000,000				0				1,320,000,000	

엑셀다운로드 구매실적 저장

3-1.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직접구매) 구매실적 등록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만 해당

가.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1) 등록방식 선택 →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 [엑셀양식 다운로드] → 엑셀 파일 저장

2) 엑셀양식 파일(예비사회적기업_직접구매_품목실적(양식).xlsx)에 실적 작성

* 엑셀 양식에 작성시 원래의 표시형식[텍스트]을 그대로 유지(변경시 오류발생)

3) [엑셀 업로드]

4) [파일 선택] → 작성한 파일 업로드 → [등록방식] 선택(초기화후 등록 또는 추가등록) →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검사결과] 확인(정상、비매칭、공란、오기재、중복) 후 수정 → [저장하기]

5)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 [구매실적 저장] → 다음 단계로 이동

나. [월별 구매실적] 등록

* [품목별 구매실적] 방식으로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만 선택

1) 등록방식 선택 → [월별 구매실적 등록] → [엑셀양식 다운로드] → 엑셀 파일 저장

2) 엑셀 파일에 실적 작성

* 엑셀 양식에 작성시 원래의 표시형식[텍스트]을 그대로 유지(변경시 오류발생)

3) [엑셀 업로드]

4) [파일선택] → 작성한 파일 업로드 →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검사결과] 확인(정상, 공란, 오기재) 후 수정 → [저장하기]

* 엑셀 업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고, 최근 업로드한 데이터로 갱신됨

5)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 [구매실적 저장] → 다음 단계로 이동

3-2.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간접구매) 구매실적 등록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만 해당

가.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1) 등록방식 선택 → [품목별 구매실적 등록] → [엑셀양식 다운로드] → 엑셀 파일 저장

2) 엑셀 양식 파일(예비사회적기업_간접구매_품목실적(양식).xlsx)에 실적 작성

* 엑셀 양식에 작성시 원래의 표시형식[텍스트]을 그대로 유지(변경시 오류발생)

3) [엑셀 업로드]

4) [파일 선택] → 작성한 파일 업로드 → [등록방식] 선택(초기화후 등록 또는 추가등록) →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검사결과] 확인(정상, 비매칭, 공란, 오기재, 중복) 후 수정 → [저장하기]

5)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 [구매실적 저장] → 다음 단계로 이동

나. [월별 구매실적] 등록

* [품목별 구매실적] 방식으로 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만 선택

1) 등록방식 선택 → [월별 구매실적 등록] 선택 → [엑셀양식 다운로드] → 엑셀 파일 저장

2) 엑셀 파일에 실적 작성

* 엑셀 양식에 작성시 원래의 표시형식[텍스트]을 그대로 유지(변경시 오류발생)

3) [엑셀 업로드]

4) [파일선택] → 작성한 파일 업로드 →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검사결과] 확인 (정상, 공란, 오기재) 후 수정 → [저장하기]

* 엑셀 업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고, 최근 업로드한 데이터로 갱신됨

5) 직접구매 및 간접구매 실적이 합산된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확인 → [구매실적 저장] → 다음 단계로 이동([구매계획 관리])

4. 2025년 구매계획 입력

1 2025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 등록

가. [구매계획 일괄등록]

* [구매실적 관리]의 마지막 입력 단계에서 [구매실적 저장]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인 [구매계획 관리] 화면으로 전환됨

** **<u>[기준연도 조회]가 202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등록</u>**

1) [구매계획 관리] → [엑셀양식 다운로드] → 파일 저장

2) 엑셀 양식 파일(사회적기업_구매계획(양식).xlsx)에 실적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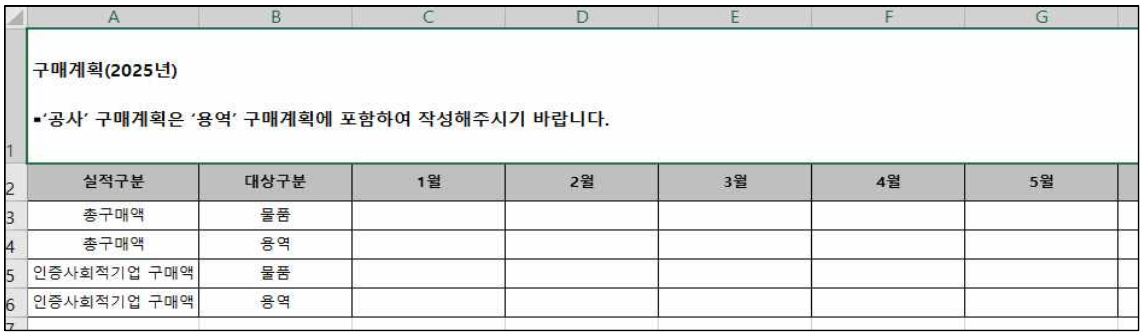

구매계획(2025년)

▪'공사' 구매계획은 '용역' 구매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구분	대상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총구매액	물품					
총구매액	용역					
인증사회적기업 구매액	물품					
인증사회적기업 구매액	용역					

* (유의사항)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만 작성해야 하며,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은 제외

* 엑셀 양식 작성시 원래의 표시형식[텍스트]을 그대로 유지(변경시 오류발생)

3) [엑셀 업로드]

4) [파일선택] → 작성한 파일 업로드 → [데이터 정합성 검사] → [오류검사결과] 확인(정상, 공란, 오기재) 후 수정 → [저장하기]

* 엑셀 업로드 시 기존 데이터는 삭제되고, 최근 업로드한 데이터로 갱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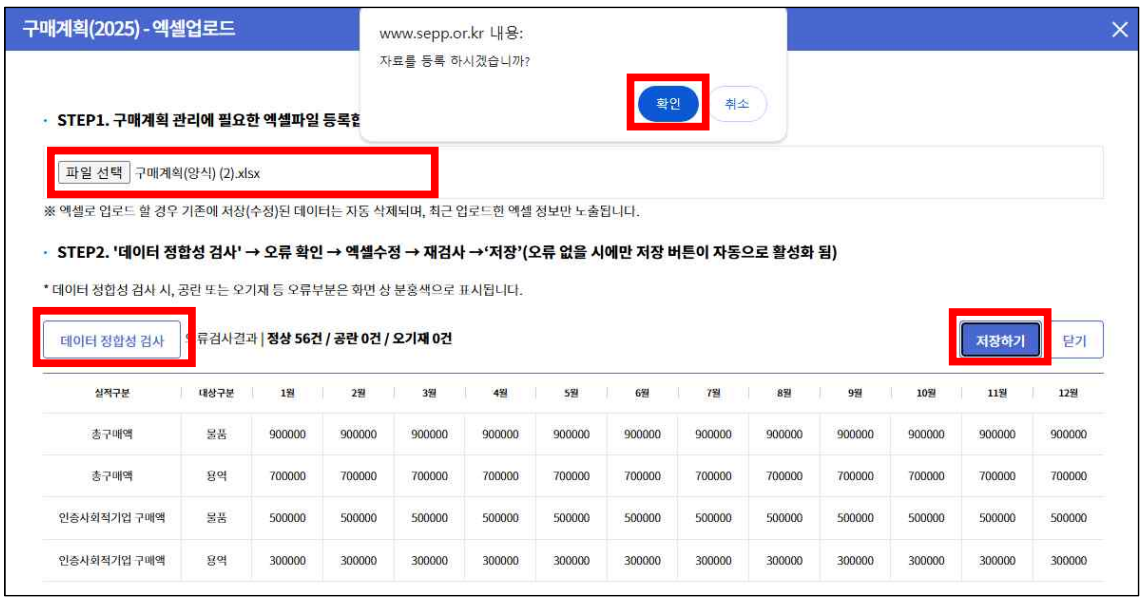

5) 업로드된 2025년 구매계획 [(인증)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및 총구매액] 입력내용 확인 → [구매계획 저장] → 다음 단계로 이동(검토 및 제출처리)

[2025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총 구매액 입력내역 확인

(단위: 원)

실적 / 시기		(인증)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2025)		총 구매액(2025)	
		물품	용역	물품	용역
1분기	1월	500,000	300,000	9,000,000	7,000,000
	2월	500,000	300,000	9,000,000	7,000,000
	3월	500,000	300,000	9,000,000	7,000,000
2분기	4월	500,000	300,000	9,000,000	7,000,000
	5월	500,000	300,000	9,000,000	7,000,000
	6월	500,000	300,000	9,000,000	7,000,000
3분기	7월	500,000	300,000	9,000,000	7,000,000
	8월	500,000	300,000	9,000,000	7,000,000
	9월	500,000	300,000	900,000	700,000
4분기	10월	500,000	300,000	900,000	700,000
	11월	500,000	300,000	900,000	700,000
	12월	500,000	300,000	900,000	700,000
소계		6,000,000	3,600,000	75,600,000	58,800,000
총계		9,600,000		134,400,000	

엑셀다운로드 구매계획 저장

5. 검토 및 제출

* **[기준연도 조회]가 2024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1 작성 내용 검토

가. **[2024년] 품목실적 정보**

* [구매실적 관리] 단계에서 [품목별 구매실적]을 등록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

1) [월별현황]에서 월별 내역 및 [엑셀 다운로드] 가능

구매실적 관리
등록 (2025.01.03)

구매계획 관리
등록 (2025.01.03)

검토 및 제출처리
미제출

기준년도 조회 2024 조회

• 시스템 문의 : 02-2205-2365 (e-store 36.5 운영사 ㈜오엠인터랙티브)
• 제도 문의 : 1566-536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구매지원센터)

[2024년] 품목실적 정보

월별현황 상세내역 조회

구분		물품(원)	용역(원)	소계(원)	총계(원)
인증사회적기업 구매액	직접구매	0	6,000,000	6,000,000	7,400,000
	간접구매	0	1,400,000	1,400,000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액	직접구매	0	0	0	0
	간접구매	0	0	0	

[2024년] 구매실적 정보

월별현황

구분		물품(원)	용역(원)	소계(원)	총계(원)	비율(%)
총구매액		60,000,000	72,000,000	-	132,000,000	-
인증사회적기업 구매액	직접구매	0	6,000,000	6,000,000	7,400,000	5.61
	간접구매	0	1,400,000	1,400,000		
예비사회적기업 구매액	직접구매	0	0	0	0	0
	간접구매	0	0	0		

[2025년] 구매계획 정보

구분	물품(원)	용역(원)	합계(원)	비율(%)
총구매액	75,600,000	58,800,000	134,400,000	-
인증사회적기업 구매액	6,000,000	3,600,000	9,600,000	7.14

품목실적 월별현황

엑셀 다운로드

구분		1월 / 7월	2월 / 8월	3월 / 9월	4월 / 10월	5월 / 11월	6월 / 12월	합계	소계	총계
인증사회적기업 (직접구매)	물품	0	0	0	0	0	0	0	6,000,000	7,400,000
		0	0	0	0	0	0			
	용역	0	0	1,500,000	1,200,000	0	0	6,000,000		
		1,500,000	0	1,000,000	0	600,000	200,000			
인증사회적기업 (간접구매)	물품	0	0	0	0	0	0	0	1,400,000	
		0	0	0	0	0	0			
	용역	250,000	320,000	130,000	100,000	0	0	1,40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150,000			

2) [상세내역 조회]에서 작성한 상세내용 확인 및 [엑셀다운로드] 가능

* 검색항목을 설정하여 정보 확인 가능(기업구분, 구매구분, 물품/용역, 월, 일자 선택)

순번	지급일자	하위기관명(부서명)	적요(건명)	사회적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통계목
40	2024-01-05	공공기관명	기념품 구매	224-82-07605	50,000	
39	2024-03-05	공공기관명	기념품 구매	105-82-15954	500,000	통계목
38	2024-03-05	공공기관명	기념품 구매	105-82-15954	500,000	통계목

나. [2024년] 구매실적 정보

1) [월별현황] 클릭하여 월별 내역 및 [엑셀다운로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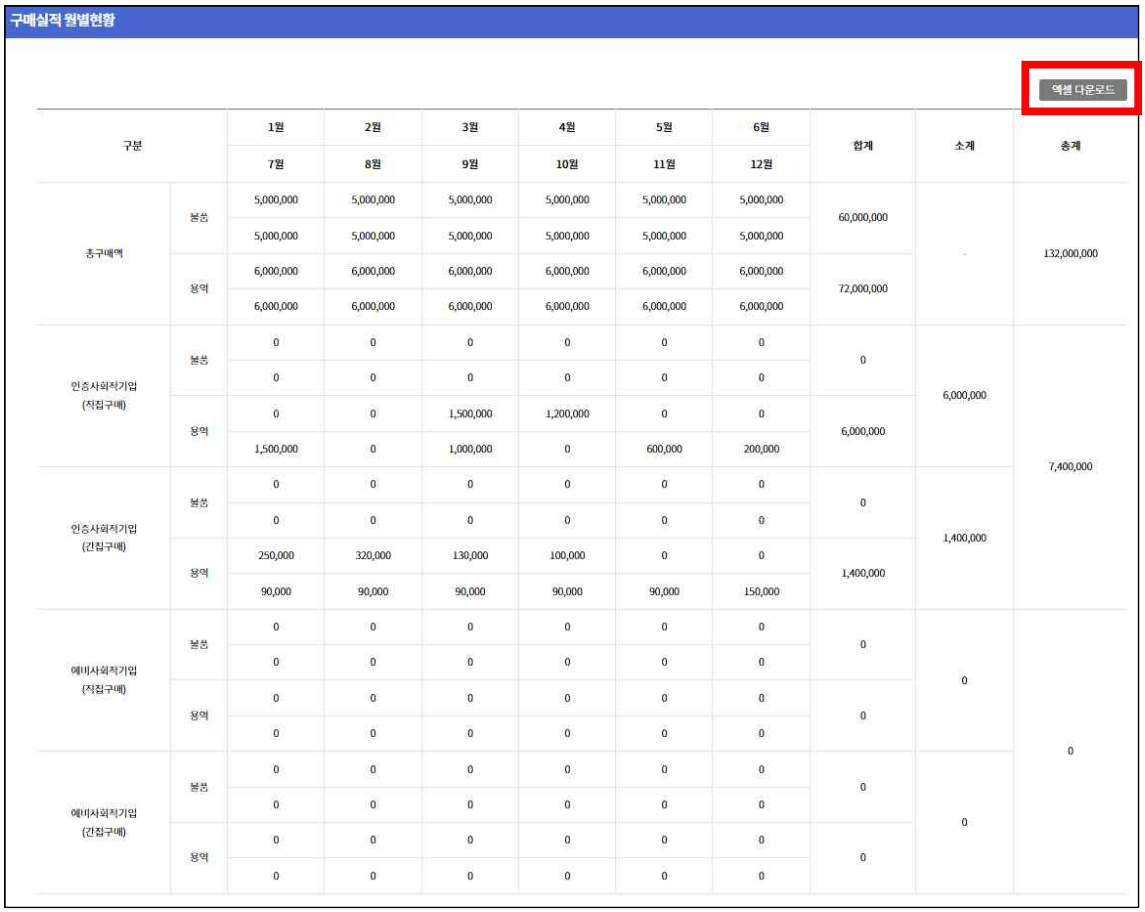

구분		1월 / 7월	2월 / 8월	3월 / 9월	4월 / 10월	5월 / 11월	6월 / 12월	합계	소계	총계
총구매액	물품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60,000,000	-	132,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용역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72,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인증사회적기업 (직접구매)	물품	0	0	0	0	0	0	0	6,000,000	7,400,000
		0	0	0	0	0	0			
	용역	0	0	1,500,000	1,200,000	0	0	6,000,000		
		1,500,000	0	1,000,000	0	600,000	200,000			
인증사회적기업 (간접구매)	물품	0	0	0	0	0	0	0	1,400,000	
		0	0	0	0	0	0			
	용역	250,000	320,000	130,000	100,000	0	0	1,40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150,000			
예비사회적기업 (직접구매)	물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용역	0	0	0	0	0	0	0		
		0	0	0	0	0	0			
예비사회적기업 (간접구매)	물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용역	0	0	0	0	0	0	0		
		0	0	0	0	0	0			

다. [2025년] 구매계획 정보

* 입력된 구매계획 확인 가능(총구매액, 인증사회적기업 구매액, 구매비율 등)

3 담당자 정보 입력 및 제출 처리

1) [담당자 정보 입력] → [부서, 연락처(사무실, 휴대폰), 이메일(기관 계정)] 작성 → [제출] → [검토 및 제출처리]에서 제출여부 확인

* [검토 및 제출처리] 하단에 '제출(0000.00.00.)' 표시가 나와야 제출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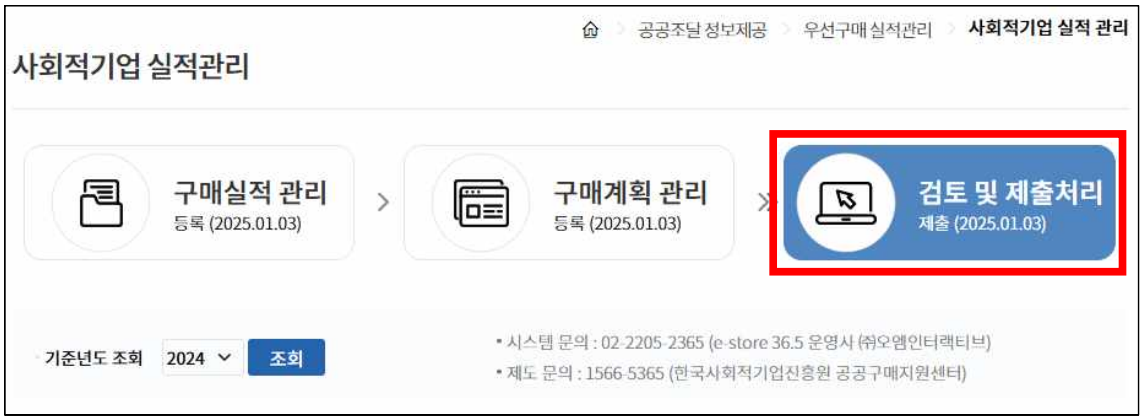

붙임 7 자주하는 질문(FAQ)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관련

Q 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 ㅇ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임
- ㅇ 최상위 기관이 소속기관의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제출(교육청의 경우 소속 교육지원청의 실적을 합산)
- ㅇ 단, 해당기관의 **소속기관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실적에 합산하지 말고 소속기관 개별 실적으로 제출(지방공기업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 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Q 2.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포함되는 구매 범위는?

- ㅇ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직접 계약(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소액 구매 포함)하여 구매하는 직접구매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과 계약체결 후 **계약기업(비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간접구매**)도 실적으로 인정
- ㅇ 단, 간접구매의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확인·보관해야 함

Q 3.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대행 기관을 통하는 경우 구매실적 인정 여부는?

- ㅇ 구매대행 기관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경우,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액만 인정(일반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구매실적에서 제외)**
- ㅇ 따라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구매명세서 등)를 확인·보관 필요

Q 4. 공공기관(자치단체 등)이 직접 출연한 기관(민법상 재단법인)의 구매실적은 소속기관 실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ㅇ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출연한 (재단)법인의 우선구매 실적은 원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구매실적에 포함할 수가 없음** * 단, 재단법인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실적으로 별도 인정

Q 5. 사회적기업 제품의 법적 의무구매 비율 또는 구매계획 수립시 기준은?

ㅇ 사회적기업 제품의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음 ㅇ 다만, 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지표 및 기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계획 수립

Q 6. 우리 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ㅇ 국가기관, 자치단체, 교육청은 각 재정시스템(디브레인, e-호조, 에듀파인)에서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거래내역 집계 가능 ㅇ 그 외 기관은 e-store 36.5 사이트(www.sepp.or.kr)의 [공공조달 정보] - [우선구매 실적입력]에 게시된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 DB를 다운받아 기관의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거래내역을 집계 ㅇ 기관의 재정시스템으로 집계되지 않는 구매실적 및 간접구매 내역은 구매증빙 등을 확인하여 수기로 집계 필요

Q 7. 제출된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활용은?

ㅇ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은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ㅇ 또한, 자치단체(행안부), 공기업·준정부기관(기재부), 지방공기업(행안부) 등 공공기관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Q 8.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도 제출대상인지?

ㅇ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실적만 제출 대상**이며, **예비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은 미포함** ㅇ 단,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합동평가(행안부) 등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별도 제출 필요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방법 관련

Q 9.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ㅇ 온라인으로는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www.sepp.or.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확인·구매할 수 있으며, ㅇ 오프라인으로는 **공공구매 지원센터(☏ 1566-5365)**에 문의하여 확인 및 구매할 수 있음

Q 10. e-store 36.5(www.sepp.or.kr)에서 구매(결제) 방법은?

- e-store 36.5(www.sepp.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상품을 검색하거나, 수시로 진행되는 기획전을 통해 추천상품 등을 구매가능
- 결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및 무통장 입금(후불결제 포함), 전자세금계산서(위수탁세금계산서 포함) 발행 등 가능

Q 11. e-store 36.5에서 기관카드로 결제시 재정시스템에 구매실적이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 기관카드로 결제시 재정시스템에 자동으로 구매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카드사로 거래처가 인식되기 때문임)
- 따라서, 수기로 내역을 작성·취합하여 구매실적 제출 필요
- (Tip) e-store 36.5에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사회적기업으로 표시되어 기관 재정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집계 가능

Q 12. e-store 36.5에 예비사회적기업 제품도 있는지?

- e-store 36.5(www.sepp.or.kr)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제품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이 등록되어 있음

Q 13.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비율 30%를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에 한해 1인 견적 5천만 원, 2인 견적 1억 원까지 수의계약 체결 가능**

* '24년말 기준으로 구매 당시에 계약관련 법령 재확인 필요

ㅇ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해당 기업에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및 발급 가능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해당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확인 후 수의계약 체결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평가 관련

Q 14.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

ㅇ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안전 및 책임평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평가지표로 반영

Q 15.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평가시 "사회적기업"의 범위는?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안전 및 책임평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만 대상

ㅇ 단,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인증 사회적기업' 외에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도 포함

Q 16. 구매 당시 사회적기업이 아니었으나, 이후에 인증받은 경우?

ㅇ 유효한 인증기간에 구매한 실적만 인정됨

* 예시 : 2024.6.1. 인증인 경우 2024.6.1부터 실적으로 인정

Q 17. 사회적기업 지점을 통해 구매한 경우는?

ㅇ 사회적기업 지점을 통해 구매한 경우, 본점의 유효한 인증기간에 구매한 실적만 인정

* 해당기업에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점 신청 후 진흥원의 승인이 완료된 지점에 한해서, 구매실적으로 인정 (승인된 지점은 인증사회적기업 리스트에 포함됨.)

Q 18.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관련 총구매액 산정 기준은?

ㅇ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액이 기준임

ㅇ 단, 자치단체의 경우 <붙임 5>에 따름

참고 1	e-store 36.5 공공기관 구매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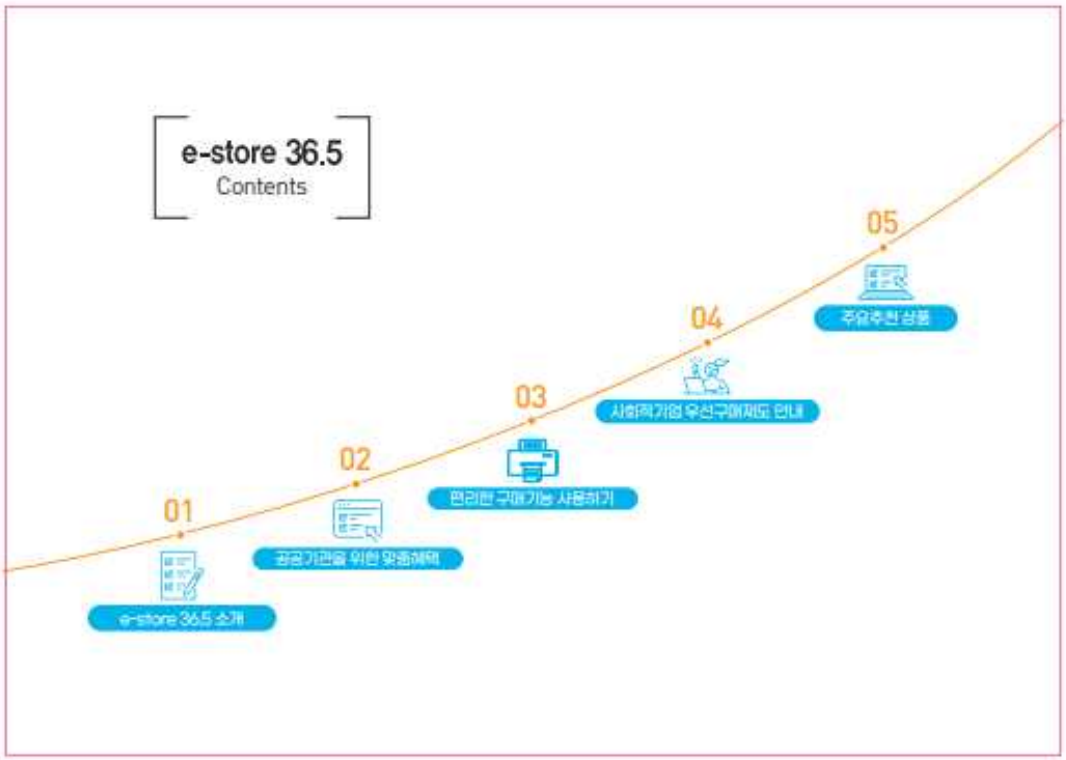

e-store 36.5 소개

"e-store 36.5(www.sepp.or.kr)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제품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ore 36.5 주요기능

01 사회적경제 상품몰

e-store 36.5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상품몰로서 전국에서 생산 · 유통되는 다양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2천(1백)여개 업체, 3만여개 상품 등록·판매
- 공공기관에서 상품등록 요청 가능(용역 · 서비스 포함)

0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원

e-store 36.5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직접구매 실적으로 인정도 되고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실적(자동연계)에서 e-store 36.5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위한 맞춤 혜택

"우선구매 지원을 위한, e-store 36.5에서만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세요"

이제 e-store 36.5에서 구매하면
사회적기업 제품 직접구매 실적으로,

위수탁세금계산서는
직접구매 실적이 됩니다

- ☑ 상품 확인하고, 견적·상품 주문하고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 받아 무통장입금만 하면 끝!
- ☑ 위수탁세금계산서 처리 건은 증빙이 불필요하며 직접구매 실적으로 자동 집계
  ※ 공공기관 회원의 소속기관 정보에 따라 구매실적 집계됨
- ☑ 위수탁세금계산서 공급자는 사회적기업 정보로 확인 구매상품이 우선구매 중복 인증 상품에 해당할 경우, 복수 구매실적으로 인정 가능
  ※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

e-store 36.5 에서 위수탁세금계산서 처리하기

❶ 견적요청
상품을 선택 → **[우선구매 견적요청]** 클릭하면
새로운 창 오픈 → 요청내용 입력 후 → [요청하기] 클릭

❷ 구매
마이페이지 [견적요청목록] 클릭 → [상세보기] 클릭 →
[바로결제] 클릭 → **결제방법 : 무통장 선택 후** → [결제하기] 클릭

❸ 위수탁세금계산서 요청
마이페이지 [세금계산서요청] 클릭 → 주문 선택 후 →
[세금계산서신청] 클릭하면 새로운 창 오픈 → **위수탁계산서 발행 확인 및 내용입력 후** → [세금계산서 신청하기] 클릭

편의기능 활용 Tip!!

"견적요청부터 구매, 거래명세서 출력까지!
One-stop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분들, 이렇게 편하게 구매하세요!

법인카드 결제, 무통장입금은 당연히 가능!!

견적결제
대량구매 등 가격협의가 필요한 경우 가격협의 후 **견적가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후불결제
바로결제가 어려우신가요?
공공기관 회원은 **후불결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 수령 및 검수 이후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구매실적 연계

e-store 36.5 에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 시
우선구매 실적 및 구매계획에 모두 반영됩니다.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정보제공

전국 사회적경제기업과 상품을 만나볼 수 있고,
바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 제품을 찾으시나요?
e-store 36.5 의 **인증상품관**에서 다양한 우선구매 상품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❷ 편의한 구매기능 사용하기 e-store 36.5

편의기능 활용 Tip!!

"견적요청부터 구매, 거래명세서 출력까지!
One-stop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매서류 온라인 출력서비스

우선구매 견적서

❶ 상품을 선택 → **[우선구매 견적요청]** 클릭하면 새로운 창 오픈
❷ 견적요청관련 내용 기입한 후 → **[요청하기]** 클릭
❸ 마이페이지 [견적요청목록] 클릭 → **[상세보기]** 클릭
❹ 견적서 출력을 원하는 경우 → **[견적서출력]** 클릭

구매증빙 서류

❶ 마이페이지 [주문/배송조회] 클릭 → **[주문상세]** 클릭
❷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기업인증서] [거래명세서] [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등 클릭하면 새로운 창 오픈
❸ 출력을 원하는 경우 → 🖶 클릭

상품등록 요청서비스

구매희망 상품 등록

- e-store 36.5 에서 판매되는 상품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소싱하여 맞춤상품 안내 및 구매를 지원해 드립니다.
- 우선구매실적/공공조달 페이지에서 **[공공기관 희망상품]** 클릭 후 **[상품추천등록]** 입력
- **[공공기관 희망상품]** 기능은 공공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 주문서비스

❶ 견적요청
상품을 선택 → **[우선구매 견적요청]** 클릭하면
새로운 창 오픈 → 견적요청사항 입력한 후 → **[요청하기]** 클릭

❷ 견적확인
마이페이지 **[견적요청목록]** 클릭 → **[견적서확인]** 클릭

❸ 구매하기
마이페이지 **[견적요청목록]** 클릭 → **[바로결제]** 클릭

견적요청 목록

물품 수령 후, 후불결제서비스

❶ 구매하기
상품을 선택 → **[바로구매]** 클릭 → **결제방법 : 무통장 선택 후 [결제하기]**

❷ 물품수령
마이페이지 **[주문/배송조회]** 클릭 → **[구매확정]** 클릭

❸ 후불결제
마이페이지 주문번호 아래 **[결제]** 클릭 → 결제방법 선택 후 → **[결제하기]**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정의

공공기관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❶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❷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범위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주요추천 상품
e-store 36.5
가치소비 세트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사회적기업
자조, 사회적거래, 비즈니스솔루션
빅이슈 정기구독 12개월
168,000원
서울(은평구)
위캔센터
사회적기업
우리밀쿠키 3종선물세트
12,500원
경기(고양시)
(주) 공기한디크래프트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티크젓가락 &받침 선물 세트
30,000원
서울(마포구)
화이통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함해화첩 건강꽃차 프리미엄
32,000원
강원(영월)

주요추천 상품
e-store 36.5
가치소비 세트
㈜어스맨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지구마을 건과일 4종 선물세트
35,000원
서울(은평구)
(주)리디브
예비사회적기업(자격형), (무자형)
봉화정 꿀스틱 천연발꿀 선물세트
33,000원
서울(성동구)
정선아라리한라농원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감옥연 도라지정과
48,000원
강원(정선군)
농업회사법인 새롬주식회사
예비사회적기업
SINCE 1908 조치원 복숭아
21,000원
세종(조치원읍)

주요추천 상품
e-store 36.5
친환경
추천 상품
주식회사 퀸비스토어
사회적기업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험헤이스트 포장
친환경 천연 여행 트래블 KIT
13,000원
강원(원주시)
(주)웰씨티슈
사회적기업
지구와 나를 보호하는 'BOHO'
자연보세 먼지없는 친환경
대나무 미용티슈 200매
21,600원
서울(금천구)
(주)세상에 없는 세상
사회적기업
오직 우리땅 농산물로 만든
친환경 비건 설거지비누
자상한농부 설거지 비누 세트
22,000원
서울(은평구)
주식회사 비즈링크
예비사회적기업
Organic Towel
소중한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퓨어 오가닉코튼 타올/수건/타월
4,500원
대전(대덕구)

주요추천 상품
e-store 36.5
사무실
소모품
추천 상품
공공기관
공공구매 담당자를 위한
인기상품×
모음전
e-store 36.5
(주)신성피엔에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친환경복사용지 80g
신성카피 복사용지 80g A4
26,000원
인천(계양구)
(재)아름다운커피
사회적기업
콜드브루
킬리만자로의 선물 콜드브루 16개입
14,800원
서울(종로구)
(주)제일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랑의 종이컵'
친환경 6.5oz 종이컵(1,000EA)
10,600원
경북(칠곡)
주식회사 디홀연구소
사회적기업
유니버셜디자인배너
15,000원
서울(성북구)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담당기관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재단법인 행복아이씨티	031-697-7835 070-7893-9611

참고 2 〔오프라인〕 공동판매장〔스토어 36.5〕

□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에 문의하여 구매

* 지역별 매장 입점 현황은 e-store 36.5(sepp.or.kr) 접속
→ [판로정보] → [공동판매장(Store 36.5)]에서 확인 가능

<스토어 36.5 현황(85개소, 24.12월 기준)>

연번	매장명	운영주체	지역	매장주소
1	노원점	노원구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409 노원역 7호선 4번 출입구
2	미아점	(재)아름다운가게	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42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3	안국점	(재)아름다운가게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1
4	녹번역점	은평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1층
5	도곡점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22 오이빌딩 103호
6	목동부영점	(재)아름다운가게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106호 (목동부영그린타운3차, 1층)
7	북가좌점	울림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100 가재울래미안 e-편한세상 상가 201동 1층 상가
8	종로점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9	강서점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7, 1층
10	화곡점	환경운동연합 에코생활협동조합	서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49, 1층
11	구산점	은평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75, 엘타워 1층(구산동)
12	백련산점	은평두레생협	서울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22길 21, 1층
13	응암역점	은평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9, 센터폴리스 105호
14	진관점	은평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67, 909동 104호
15	성산점	울림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7, 1층
16	용강점	울림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51, 1층
17	망원점	울림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57, 1층
18	금천점	금천지역자활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291, 지하1층
19	보라매점	서울남부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74 광덕빌딩 1층
20	상도점	서울남부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217-4, 지하 1층
21	미성점	서울남부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6, 1층
22	사당점	서울남부두레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바길 9, 동작삼성래미안 아파트상가 102호
23	개포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주공5단지 상가 101호
24	낙성대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6, 1층
25	서대문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로 25번길 서대문마을생협

연번	매장명	운영주체	지역	매장주소
26	방학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0 신동아타워 상가 108호
27	신정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
28	용산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
29	양천점	행복중심생협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0길 16-23
30	홍은점	은평두레생협	서울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9, 2층 제10호
31	이매점	(재)아름다운가게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476 오성빌딩 1층
32	오이도점	㈜소셜에코	경기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정왕동 878)
33	의왕점	경기남부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의왕시 갈미2로 18, 삼대프라자 102호
34	분당점	주민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7번길 4-1
35	수원 영통점	경기남부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7, 영통트리플렉스 제1층 108~9호
36	평택안중점	평택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8길 23
37	부천 소사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부천시 은성로 88(송암빌딩 1층)
38	시흥 연성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9번길 2 부석프라자
39	평택지산점	평택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평택시 지산로 82, 1층
40	광명하안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52 중앙상가 1층
41	중동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석천로 94 (중동,경동빌딩 1층)
42	은행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55번길 17 101호 (은행프라자)
43	상동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3 크라운빌딩
44	중동역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07(중동, 팰리스카운티) 아이파크상가내 102호
45	오정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그린메디칼프라자 1층
46	역곡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4 역곡이편한세상 상가 1층
47	위브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1 위브더스테이트상가 6동
48	송내역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00 부건프라자 101호
49	대야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18 하나골드타워 105호
50	능곡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74 미래도프라자 105호
51	철산점	경기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센트레빌상가 104
52	안산점	경기남부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로 30, 1층
53	본오점	경기남부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1, 동림빌딩 104, 105호
54	죽전점	경기남부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09 현대프라자 109호
55	산본점	경기남부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00

연번	매장명	운영주체	지역	매장주소
56	안양점	바른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84
57	영통점	바른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58	평촌점	바른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105호
59	천천점	바른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천천그린프라자 104호
60	동탄점	바른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모닝타운 114호
61	인덕원점	바른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62	매탄점	바른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63	하남점	(주)나누리	경기	경기도 하남시 미시강변한강로 135 스카이폴리스 나동 448호
64	덕양점	행복중심생협	경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2 블레스타운 106호
65	마두점	행복중심생협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0 백마플라자 103호
66	후곡점	행복중심생협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23 보성상가 106호
67	수지점	주민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72번길 20
68	성남만남점	주민두레생협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9
69	진중점	팔당생명살림생협	경기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4
70	덕소점	팔당생명살림생협	경기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로97번길 99 107호
71	하남점	팔당생명살림생협	경기	경기도 하남시 더우개로 29
72	인천 만수점	푸른두레생협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387 1층
73	춘천석사점	(재)아름다운가게	강원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87(석사동) 1층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
74	설레임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 카점	㈜소박한풍경	강원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392 하부정차장 2층
75	후레쉬마트 점	후레쉬생생슈퍼마켓	강원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77 후레시마트
76	당진점	환경운동연합에코 생활협동조합	충남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 1층 두레생협
77	청주점	청주가농영농조합법인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60번길25-2
78	대전 탄방점	(재)아름다운가게	대전	대전시 서구 계룡로651(용문동)1층
79	지족점	대전충청푸드플랜이종협 동조합연합회	대전	대전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40 105호
80	도안점	대전충청푸드플랜이종협 동조합연합회	대전	대전시 유성구 봉명로 27-19 1층
81	전북점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39번지
82	광주 송정점	세상에서가장아름다운나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62
83	진양호점	진주우리먹거리 협동조합 진주텃밭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44번길 6
84	소셜컴바인 점	㈜착한세상	부산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50번길 31
85	제주점	주식회사 스토어36.5 제주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과원북4길11 1층 스토어 36.5 제주점

참고 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 **(추진목적)**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도 향상을 통한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교육 개요**

○ **일 정:** '25. 1. 1.(월) ~, 상시 수강 신청 가능

○ **교육방법:** 진흥원 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을 통한 회원가입 및 교육 신청 후 수강

* PC 및 모바일에서 수강 가능

○ **교육비용:** 무료

○ **교육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담당자 등 전체 임직원

○ **교육과정:** 1개 과정

교 육 명	과 정 명	시간
공공기관을 위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 교육	1.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기업	2시간
	2. 우선구매제도란?	
	3. 우선구매제도의확대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방법	
	5. 공공기관 구매 우수사례	

○ **수료조건:** 학습 진도율 80% 이상

○ **교육혜택:** 수료자 대상으로 ①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②교육시간 인정(각 공공기관에 기관 자체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되도록 고용노동부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완료)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온라인 교육 이수 협조요청" 공문 발송 예정 (고용노동부)